

韓國의 國際經營

—輸出, 外資導入, 技術導入을 중심으로—

趙 東 成
(서울大 經營大 助敎授)

A. 韓國의 輸出制度和 實績

1. 韓國의 輸出制度

(1) 輸出入管理制度的 心性 및 特徵

輸出入管理란 수출입 행위에 따른 제반 절차를 규제 또는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규 및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自由貿易이 이상적인 무역형태로 간주되고 있지만 현재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국가가 수출입거래에 대하여 깊은 관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産業化過程의 역사가 짧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내 여건하에서 輸出主導型 경제성장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출입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수출입관리의 목적은 貿易去來法 제 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대외적인 輸出入去來活動을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조정하고 있다.

수출입관리의 主要法規로는, 첫째 대외수출입거래의 기준법인 貿易去來法, 둘째 外國換管理法, 셋째 關稅法, 넷째 特別法 등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輸出入管理의 主要特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입관리의 기본방향이 輸出指向의 性向을 띠며 따라 수출지원에 관한 각종 조치가 많

은 편이다.

② 수출입거래의 物的管理와 함께 代金決濟에 관한 外換管理를 병행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개입과 역할이 크다.

③ 수출입업의 자격에서 수출입행위에 이르기까지 全面管理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④ 수출입관리의 대상이 다양하고 유동적이어서 정부가 많은 부문을 위임·위탁 관리하는 한편 각종 告示, 公告 및 例規, 通牒 등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⑤ 수출입관리는 公開的·事前例示的으로 운영되고 있다.

(2) 貿易去來法에 의한 관리

① 輸出入主體管理

貿易去來法 제 3조에 따라 물품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商工部長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자격유지에 관하여도 同法 제 30조에서 수출입업의 허가취소 및 기타 制裁事項을 適用받고 있으며, 또한 동법 施行令에서는 수출입업의 자격유지를 위해서 1년간 일정액 이상의 수출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② 輸出入對象地域管理

동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특정국가나 지역에 대하여는 수출입을 금지·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지·제한되지 아니한 공산국가나 지역에 대한 수출입행위는 그 행위가 업무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反共法, 國家保安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공고, 증명서 또는 수출입허가서의 요구 등에 의하여 수출입을 제한하는 수가 있다.

③ 輸出入去來形態管理

수출입행정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貨換수출신용장에 의한 수출 등 12가지 거래방식을 규정하고, 이 중 求償무역과 특수 무역방식을 제외한 10가지 거래방식에 대한 수출입허가권한을 外國換銀行長에게 위임하고 있다.

④ 輸出入物品管理

상공부장관은 수출입기별공고에 의하여 수출입물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수출입기별공고는 ㉔ 수출입의 가부에 대하여 품목별로 承認·許可·禁止品目으로 구분표시하고 ㉕ 수출입물품의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의 한도,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책정하여 수출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⑤ 輸出商品 品質管理

수출상품에 대한 품질관리는 수출검사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수출품의 품질 및 對外聲價의 유지향상과 건전한 수출무역을 조성키 위하여 일정물품에 대하여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⑥ 輸出品 價格管理

부당한 덤핑이나 부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역거래법은 필요한 경우에 그 물품의 기준가격 또는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査定 公고하고 同公告의 가격범위 내에서 수출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外國換管理法에 의한 管理

① 外國換管理의 目的

國內外經濟의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재정금융정책 등 간접통제방식만으로 충분하므로 부득이 직접적인 방법인 外國換管理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동법 제1조는 外國換管理의 目的을 ① 국제수지의 균형, ② 통화 가치의 안정, ③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外換管理上의 特性

동법 제2조에서 이 법에 의한 제한은 이 법이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운용되

어야 하며, 정부는 국제수지의 개선, 통화가치의 안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제한이 완화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最小制限主義 또는 制限緩和主義를 그 특질로 하고 있다. 그밖의 외환관리법의 특성으로서는 ① 國際的性格 ② 合理主義 ③ 委任立法 ④ 綜合性 등을 들 수 있다.

③ 外換管理의 對象

외환관리의 적용대상은 인적대상과 물적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人的對象으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제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외환관리의 성격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주로 거주자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외환관리의 정도를 크게 완화하고 있다. 그리고 物的對象으로는 모든 형태의 외국환 즉 對外支給手段, 外貨證券이나 外貨債權은 물론이고 內國支給手段이나 貴金屬까지도 포함한다.

④ 外換管理의 主要手段

외환관리의 주요수단으로는 첫째, 換率의 公定, 둘째 外國換의 集中, 셋째 對外支給의 制限, 넷째 資本去來의 制限 등이 있다.

⑤ 外換管理機關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는 정책의 수립은 정부기관이 담당하고, 실천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중앙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집행이 위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외환관리에 관한 최고심의기관으로서 外國換審議委員會가 설치되어 있으며 재무부, 한국은행 및 외국환은행간에 위임질서가 확립되어 있다. 그밖에 보조기구로서 換錢商, 遞信官署 및 稅關 등이 있다.

(4) 關稅法에 의한 管理

관세법의 목적은 관세의 賦課徵收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그 주요기능은 재정수입의 확보, 국내산업의 보호, 소비억제, 수입대체 및 국제수지 개선에 있다.

관세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과세요건과 부과 및 징수제도, 둘째 관세의 감면, 환급 및 분할 납부제도, 셋째 담보제공과 사후관리제도, 넷째

보세구역 및 보세운송제도, 다섯째 關稅土제도, 여섯째 탄력관세제도 등으로 되어있다.

(5) 特別法에 의한 管理

이상에서 언급한 관리제도 이외에도 수출입거래와 관련하여 수출검사법, 수출보험법, 수출조합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기타 많은 특별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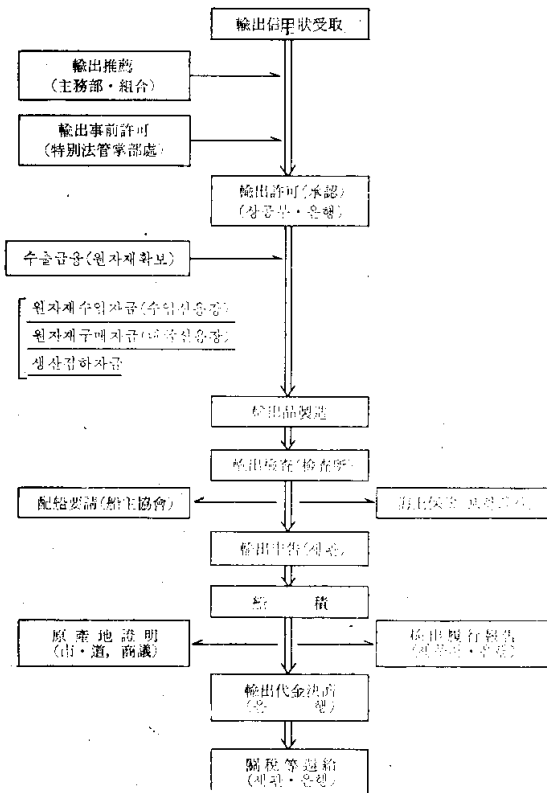
2. 輸出節次 및 支援制度

(1) 輸出節次

수출절차라 함은 앞서의 각종 법규의 내용에 따라 수출상품의 수출허가(또는 승인)시부터 수출통관 및 수출대금의 결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 輸出用 原資材를 수입할 때 優先輸入許可를 받음으로써 부여받는 對應輸出履行을 관리하는 事後管理節次까지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表 A-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수출신용장을 收取하여 主務部나 조합의 추천을 거쳐 수출허가(승인)를 받고, 원자재 확보를 위한 수출금융을 지원받아

<表 A-1> 輸出節次



원자재를 구입해서 제품을 생산하여 검사소의 수출검사를 필한 후, 수출통관하고 그 대금을 결제받으며, 필요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음으로써 모든 수출절차가 끝나게 된다.

그런데 상품을 수출하는 형태로는 현행 무역거래법상 ① 貨換輸出信用狀에 의한 수출 ② 送金方式에 의한 수출 ③ 推尋決濟方式에 의한 수출 ④ 受委託加工貿易, ⑤ 委託販賣貿易 ⑥ 中繼貿易 ⑦ 貸借借方式에 의한 수출 ⑧ 中長期延拂方式에 의한 수출 ⑨ 기타 특수무역에 의한 수출 등이 있는데, 그 거래방식의 형태에 따라 수출절차도 다소 상이하다.

(2) 輸出支援制度

수출지원이라 함은 경제성장의 추진력을 수출증대에서 찾으려는 강력한 정책적 의사의 표현으로서, 수출산업의 육성을 통한 수출증대를 위해서 정부가 수출산업에 대해서 內需산업에 대한 상대적 우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수출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또한 대외경쟁력 提高를 위한 방책으로서, 정부는 금융, 외환, 租稅, 商易行政, 수출보험 등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지원책을 전개해 오고 있다.

1) 輸出支援金融

① 設立背景

수출지원금융은 만성적으로 자금부족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환경하에서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국제금리 수준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는 정책금융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기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내부유보 등 자본력이 빈약한 상태에서, 수출상품의 공급능력의 확충과 국제경쟁력의 배양을 위해서는 금융의 양적 및 질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수출에 대한 優先支援金融은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② 變遷過程

우리나라의 수출지원금융은 그동안 수출규모의 확대와 무역거래방식의 변화에 대응해서 많은 변천과정을 밟고 있다.

1950년 「무역금융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정책적인 제도금융으로 출발한 수출금융은 1961

년 2월 「輸出金融規程」으로 代替되어 稼得額부분에 대한 금융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후 선수출계약서 등에 의한 수출금융, 수출용 원자재수입금융, 수출용 국산원자재금융 등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각각 별개의 규정으로 확대되었다가 1972년 3월에 이들 금융이 수출금융으로 통합개편되었다. 그후 수출규모가 커지고 건별 용자가 복잡해짐에 따라 1976년 2월부터 생산 및 集荷資金에 한해 상사별 實績金融制度로 개편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의 수출지원금융제도는 수출상품의 질적 개선, 즉 단순가공형태의 경공업제품 위주에서 중화학공업제품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60년대의 短期運轉資金支援形態에서 점차 中長期金融支援時代로 접어들고 있다. 즉, 선박, 기계, 플랜트 등의 大型高價商品이 主宗輸出商品으로 등장됨에 따라 이에 대한 中長期 延拂輸出金融의 지원이 요청되어 1969년에 「韓國輸出入銀行法」이 제정되었고 1976년 7월에 한국수출입은행이 발족되었다.

그후 우리나라는 수출지원제도에 시대에 맞는 융통성을 주기 위해 1979년 4월에 다시 동 제도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개편된 제도를 보면 첫째, 수출금융제도 및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둘째, 상사별 去來限制度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셋째, 수출의 事後管理의 강화를 기하였으며, 넷째 D/P, D/A 및 보증신용장(stand by L/C)등에 대한 금융한도제 등을 신설하였다.

또한 79년 7월 2일부터는 업계의 수출부진으로 인한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지원금융을 확대실시해 오고 있다.

③ 種類와 內容

수출지원금융제도는 통상 금융기간의 장단에 따라 1년이내의 短期輸出支援金融과 1년이상의 中長期輸出支援金融으로 대별되며, 金融供與者의 所在地를 기준으로 하여 國內金融과 國際金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지원금융제도를 크게 短期輸出支援金融, 中長期輸出支援金融, 國際金融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a) 短期輸出支援金融

② 輸出金融

수출금융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규정인 輸出金融規程과 韓銀總裁規程인 輸出金融融資取扱細則, 貸出 再割引 및 適格認定取扱細則 그리고 韓銀總裁의 각종 通牒에 의해 용자취급되고 있다.

원래 수출금융은 수출신용장이 내도된 후 동 신용장에 의한 수출물자의 生産集荷를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稼得額금융으로 출발하였으나, 그후 수차에 걸친 개정으로 현재의 수출금융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의 복합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 稼得額金融과 原資材金融으로 구분된다.
- 수출신용장 來到後 금융과 함께 수출신용장 來到前 금융도 포함한다.
- 수출신용장 이외에 D/A, D/P 조건에 의한 先輸出契約書, 內國信用狀, 국산원자재공급 실적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도 용자대상이 된다.
- 融資時點, 融資金額, 適正融資限度 등이 資金種別(生産集荷자금, 원자재수입자금, 원자재구매자금, 완제품구매자금, 비축용완제품구매자금)에 따라 구분된다.
- L/C베이스금융 이외에 원자재금융한도별 완제품비축금융과 한도거래금융도 포함된다.

② 外貨表示 供給金融

외화로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외국 공적기관에 건설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데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출금융과 구별된다.

첫째, 수출금융은 거래상대방에 제한이 없으나 외화표시 공급금융은 거래상대방이 외국정부, 외국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둘째, 수출금융은 상품수출이 주가 되나 외화표시 공급금융은 주로 건설 및 용역이 용자대상이다.

셋째, 수출금융에는 비축용원자재수입 및 구매자금이 인정되나 외화표시 공급금융에는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農水産物 輸出準備資金

계절적인 제한을 많이 받는 수출용 농수산물의 수집사 또는 비축자인 수출업자에 대하여 수출신용장 내도전에 생산, 수집시 지원하는 수출준비금융이다.

㉑ 期限附輸出換어음의 買入

短期延拂輸出을 촉진시키기 위한 금융으로 期限附輸出換어음을 代金回收期日 전에 외국환은행이 할인 매입하여 주는 것으로서 船積後金融의 일종이다.

즉 D/A, D/P, 유전스(usance)조건으로 수출품을 선적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期限附輸出換어음을 발행하여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선적시부터 대금결제 시까지의 필요자금의 용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外國換銀行에서 할인매입한 기한부어음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이 同 어음을 담보로 대출하여 줌으로써 외국환은행의 매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b) 中長期輸出支援金融

㉒ 輸出入銀行資金

경공업제품과는 달리 선박,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 자본재의 수출은, 그 금융이 거래일 뿐만 아니라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받는 延拂條件에 의한 거래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중화학공업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으로서, 外國換銀行의 短期輸出支援金融과는 별도로 韓國輸出入銀行이 전담 취급하는 中長期延拂輸出金融이 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예비승인을 얻어야 한다.

同 은행은 중장기신용에 의한 수출 뿐만 아니라 기술제공, 해외투자, 주요자원개발,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국내공급자신용(supplier's credit)과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을 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정부들에 대한 구매자신용(buyer's credit),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轉貸借款까지도 취급하고 있다.

자금의 종류는 수출촉진, 외화획득을 위한 상업적 거래로서 용자기간이 10년 이내인 지원자

금으로서, ① 수출자금, ② 기술제공자금, ③ 수입자금, ④ 해외사업자금, ⑤ 해외투자자금, ⑥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대출 ⑦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금, ⑧ 외국정부 등에 대한 對韓決濟資金 등이 있으며, 또한 해외자원개발 및 경제협력 차원에서 용자기간 20년 이내인 지원자금으로서는, ① 주요자원개발지원자금, ② 대외 경제협력자금이 있다.

한편, 용자방식에는 輸銀이 단독으로 지원하는 單獨融資, 국내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協調融資,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용자하는 共同融資가 있다.

㉓ 外貨貸出

외화획득산업용 시설재, 수입대체산업용 시설재 등 국제수지 개선 및 경제발전에 필요한 시설재의 수입시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이다.

수입대금의 용자는 一覽出給조건인 貨換信用狀 및 지급인수조건 또는 송금방식에 의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며 용자실행 이전에 수입대금 결제가 완료된 경우는 용자대상에서 제외된다.

㉔ 海外建設輸出支援資金

해외건설공사의 규모가 장기 대형화됨에 따라 先受金 또는 외화표시공급금융 등 현행 단기금융지원방식 만으로는 공사계약이행이 어렵게 되어,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장기특별지원자금으로서, 1976년 2월 도입 실시된 자금이다.

이 자금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외국환은행이 협조하여 용자하며 자금의 용도는 계약이행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으로서 中東地域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소요되는 국산품 중기 및 자재의 구입자금이다.

㉕ 輸出産業特別設備資金

이 자금은 수출산업부문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1979년도 외화대출계획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시설재를 수입하는 수출업체의 시설재의 도입 및 설치에 사용되는 附帶費用 및 기타 내자설비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㉖ 中小企業特別輸出支援資金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설비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자금의 일

환으로 융자지원되고 있다.

c) 國際金融

㉓ 輸出先受金

이 금융은 해외의 수입자에게 수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해주는 형태의 신용공여를 말하는 것이다. 즉, 신용장개설은행이 수입업자의 의뢰에 따라 수출상품의 船積以前이라도 물품대금을 신용장상의 受益者(수출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특수조건을 명시한 先貸信用狀(red clause L/C)에 의하여 외국환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업자는 수출선수금을 受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억제키 위해 선수금의 금리, 영수한도, 대응수출이행기간 등 여러 자격요건을 강화해 오다가 1977년 12월 14일부터 선수금 受取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외지급보증을 금지하였다. 그 결과 중래 선수금을 이용해 오던 것이 점차 수출금융으로 전가되어 국내외신을 압박하는 主要因 중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㉔ 現地金融

현지금융이란, 수출업체의 현지법인 즉 해외 지사가 현지에서 필요한 자금을 현지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국내외환은행의 지급보증 아래 융자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해외부문의 통화증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외지급보증방법으로서는 보증신용장의 개설 이외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㉕ 延支給輸入

延支給輸入은 물품수입대금의 지급을 물품인수 후에도 일정기간 유예받음으로써 해외로부터 신용을 供與받는 것으로 유전스(Usance) L/C 및 D/A조건수입을 말한다.

2) 輸出支援外換制度

외환관리제도상의 수출지원은 국내외로 부터의 수출용 원자재를 適期에 충분히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부담의 경감을 지원키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① 對外貨表示支給保證制度

이는 甲類外國換銀行이 물품의 수입대금, 장기차관계약에 의한 외채상환금, 輸出入札金, 현지금융담보,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따른 화물운

임보험료, 대리점수수료 또는 원양어로비 지급에 필요한 지급보증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② 外換證書發給確約書制度

수출용원자재의 국내구매대금을 외환증서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수출용원자재의 國產代替育成 및 外貨稼得率 提高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③ 國內信用狀制度

外換證書發給確約書制度가 輸出不履行과 장기생산과정에 따른 代回金收遲延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국내원자재생산자의 자금유통을 지원하고 원자재의 國產代替化를 촉진키 위한 제도이다.

④ 先物換制度

수출업자 및 외화획득업자가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장래에 받게 될 외화가치를 미리 확정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換 Risk로부터 무역거래를 보호하고 이에 따른 수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80년 7월 1일부터 우선 美貨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동년 10월 15일자로 일본 円貨, 서독 마르크貨 및 영국 파운드貨를 추가하였다.

⑤ 保證信用狀의 回轉使用 許容

이 제도는 本支社間 보증신용장의 회전기간을 연장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지사의 국제거래활동과 수출진흥을 촉진하고 외화획득을 위한 각종 교역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장제도이다.

⑥ 輸入擔保金積立上の 優待措置

⑦ 海外支社 등의 設置

수출입업체의 해외시장개척 등 수출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지사를 獨立採算制로 하여 이를 현지에서의 독자적 영업활동이 가능한 해외지점과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로 구분하고, 그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외화의 보유 및 사용을 인정함으로써 해외지사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⑧ 其他 外換上の 支援事項

수출입중개 수수료 등의 지급과 외화획득 목적의 해외여행자에 대한 其他經費를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송금방식수출을 인정하여 美貨 2단

달러 이하의 경우 수출전에 당해수출대금의 領收를 허용하고 있다.

3) 輸出支援租稅制度

① 關稅上의 支援制度

a) 關稅還給制度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에 징수한 관세를 당해물품이나 그 물품으로 제조, 가공한 물품을 수출할 때에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관세환급방법에는 定額還給과 個別還給이 있다.

b) 關稅徵收猶豫制度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관세징수를 유예하는 제도로 1981년 6월 30일까지가 적용시한이었다.

c) 輸出品製造用機械의 關稅分割納付制度

외화획득용 시설기재의 관세를 일정기간 동안 분할납부토록 하는 제도이다.

d) 保稅工場制度

e) 標準價格評價制度

② 內國稅上 支援制度

a) 附加價値稅 免除

수출용 재화와 기타 외화획득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출용 재화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과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용 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로 한정되고 있다.

b) 特別消費稅 免除

국내외의 박람회 출품·전시와 軍納 및 외교관 또는 외국인전용판매장으로의 반출 및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부담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c) 準備金制度

해외시장개척활동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 가격변동준비금, 해외투자손실준비금 등의 損金算入을 인정해 주고 있다.

d) 特別減價償却制度

수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광업, 수산업, 또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출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본의 조기회수

및 시설개체를 촉진키 위해 특별감가상각을 허용하고 있다.

4) 輸出支援商易制度

① 輸出業體의 差等化에 의한 支援

靑色業體에 대하여는 再輸出條件見品の 관세 면제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고, 금융기관 적격업체 평가기준표에 의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實績分金融受惠業體의 선정대상이 된다.

② 綜合貿易商社에 대한 支援

綜合貿易商社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준다.

a) 국제입찰경쟁시 우선지원

b) 원자재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의 거래은행을 3개 이상 신고 가능

c) 해외지사를 甲種으로 분류

d) 비축용 완제품 구매자금 지원

e) 중단기연불수출에 따른 包括保險制度

f) 수출입기별공고상의 실수요자 또는 일정한 시설보유자로 간주(수입권 확대)

③ 其他

수출입링크제, 수출실적에 따른 지원, 수출산업공업단지의 설치 및 同入住業體에 대한 지원, 수출자유지역의 설치,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지원 등이 있다.

5) 輸出保險制度

수출보험제도는 수출 등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 중에서 해상보험 등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환거래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 또는 수입자의 파산, 대금지급거절 등의 신용위험(credit risk) 등을 구제하여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 一般輸出保險

일반상품을 포함하여 플랜트 및 기계류 등의 수출계약이 비상위험이나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파기되거나 수출할 수 없게 되어 수출자나 생산자가 입게 되는 손실 등 주로 선적전 보험사고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담보보험의 성질에 따라 輸出者保險, 生産者保險, 增加費用保險으로 나누어진다.

② 輸出金融保險

금융기관이 수출자, 對外軍納業者, 해외건설업자 등에게 船積前 지원금융을 공여한 후, 수출자의 歸責事由가 아닌 수출불능, 인도불능, 대금회수불능으로 용자금의 회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③ 輸出어음保險

신용장이 없는 D/P 또는 D/A조건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代金未回收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수출자가 발행한 貨換어음을 국내의 국환은행이 매입한 후 동 어음의 만기일에 부도(수입자의 대금지급)가 되어 어음매입은행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증 件수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④ 中長期延拂輸出保險

수출시설 등 자본재의 수출진흥을 위한 것으로, 中長期延拂輸出을 한 후 대금회수불능이나 수입자의 채무이행지연으로 인하여 수출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⑤ 輸出保證保險

수출계약이나 해외건설공사계약, 해외건설용역계약의 보증조항에 따라 「본드」를 발행한 의 국환은행이 입찰이나 계약에 따른 채무를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행하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재 국내의 국환은행의 해외건설계약 보증실적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증 금액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 要約 및 提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수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금융, 외환, 조세, 상역, 보험면에 걸쳐 실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表 A-2> 참조)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평가되는 수출의 증대가 정부의 전폭적인 보호 및 지원하에 이루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제도는 근년에 와서 연불수출 등의 증가에 따라 수출입은행에 의한 중장기수출지원 금융과 수출보험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특색이며, 또한 금융, 세제 등의 면에서 절차의 간소화, 부대비용의 경감 등의 방향으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表 A-2> 輸出支援制度

金融	短期輸出支援金融	輸出金融 外貨表示供給金融 農水産物輸出準備資金 期限附輸出換어음의 買入	
	中長期輸出支援金融	輸出入銀行資金 外貨貸出 海外建設輸出支援資金 海外建設特別設備資金 中小企業特別輸出支援資金	
	國際金融	輸出先受金 現地金融 延支給輸入	
外換	對外外貨表示支給保證制度 外換證書發給確約書制度 國內信用狀制度 先物換制度 保證信用狀의 回轉使用許容 輸入擔保金積立上の 優待措置 海外支社 등의 設置 其他		
	關稅	關稅還給制度 關稅徵收猶豫制度 輸出物品 製造用機械의 關稅分割納付別保稅工場制度 標準價格評價制度	
		內國稅	附加價值稅 免除 特別消費稅 免除 準備金制度 特別減價償却制度
	商易	輸出業體의 差等化에 의한 支援 綜合貿易商社에 대한 支援 其他	
		保險	一般輸出保險 輸出金融保險 輸出어음保險 中長期延拂輸出保險 輸出保證保險

앞으로도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① 금융면에서 플랜트 등의 시설재수출지원 자금공급의 확대, ② 세제면에서 관세환급 절차의 간소화와 내국세면에서 특히 특별상각제도 등의 확대를 통한 수출산업의 시설투자촉진, ③ 수출보험기금의 확대, ④ 商易行政면에서 수출절차의 간소화와 輸出附帶費用의 절감, ⑤ 외환관리면에서의 통제완화 등을 위해서 각종 수

출지원제도에 대한 꾸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輸出不振의 원인으로서는 근본적으로 수출산업의 國際競爭力弱化라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볼 때,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출지원정책도 점차 일반적인 생산지원체제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이제까지 수출증대의 主宗을 이루어 온 경공업 분야에 있어서도 계속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를 위한 시설 및 기능인력에 대한 투자를 급용, 세계면에서 적극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3. 韓國의 輸出實績

(1) 輸出의 構成現況과 特徵

① 概要

70년대 연평균 10%의 고도경제성장은 수출의 지속적 신장에 힘입은 바 크며, 그 前後方聯關 効果를 통해 산업구조개편, 고용증대, 국내기술의 진보에는 물론 기업규모의 국제화에도 기여하였다. (<表 A-3> 참조) 이러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은 국내시장의 협소, 자원의 빈곤, 그리고 과거 정책과의 연계성으로 볼 때 향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오늘 날과 같이 국내외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출의 질적·양적 개선을 어떻게 달성해 나가느냐가 국내경제성장의 핵심적 關鍵이 되고 있다.

1960~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국제무역환경이 우리나라에 매우 유리하여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가공위주의 경공업제품의 대폭적인 신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70년대 하반기 이후 대외적으로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앙등과 국제제품수요의 감퇴, 그리고 중공 등 後發開途國의 부상과 함께 국내적으로는 노동생산성향상을 수반하지 않은 임금의 상승, 정치적 불안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숙련된 노동력과 기술위주의 중화학제품수출에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으나, 일부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품질의 劣位와 소규모생산에 따른 단위당 생산비의 상대적 고가로 인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가 세계경제의 저속성장 속에서 우리나라의 輸出大宗品目에 대한 선진국의 광범한 수

<表 A-3> 年度別 輸出 推移

年 度	金額(千佛)	前年對比增加率(%)	
1952	27,733	—	8.2
1953	39,585	42.7	
1954	24,246	-38.7	
1955	17,966	-25.9	
1956	24,595	36.9	
1957	22,202	-9.7	
1958	16,451	-25.9	
1959	19,812	20.4	
1960	32,827	65.7	
1961	40,878	24.5	
1962	54,813	34.1	
1963	86,802	58.4	
1964	119,058	37.2	
1965	175,082	47.1	
1966	250,334	43.0	
1967	320,229	27.9	
1968	455,400	42.2	
1969	622,516	36.7	
1970	835,185	34.2	37.4
1971	1,067,607	27.8	
1972	1,624,088	52.1	
1973	3,225,025	98.6	
1974	4,460,370	38.3	
1975	5,081,016	13.9	
1976	7,715,343	51.9	
1977	10,046,457	30.2	
1978	12,710,642	26.5	
1979	15,055,453	18.4	
1980	17,504,862	16.3	

입규제와 보조적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감축내지는 철폐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같이 경직화된 국내의 경제여건하에서 경공업 위주로부터 중공업 위주로의 급속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은 中長期的 측면에서 수출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개편이 모색되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있다. 하겠

2) 商品別 輸出實績

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기 전인 1960년대초 우리나라의 수출상품구조는 농산물, 活鮮魚, 중석을 비롯한 광산물 등 1차상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수행으로 사회간접자본분야의 시설 확충,

〈表 A-4〉 商品別 輸出實績

(단위: 천달러, ()는 %)

구 분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농 산 물	2,180 (5.5)	1,642 (6.8)	2,510 (14.3)	3,018 (12.0)	2,040 (9.6)	1,532 (9.0)	3,480 ^a (17.5)
수 산 물	3,439 (8.7)	3,430 (14.1)	1,990 (11.3)	2,890 (11.5)	3,346 (15.7)	4,246 (25.3)	3,649 ^a (17.8)
광 산 물	31,352 (76.1)	15,862 (64.7)	9,990 (56.8)	16,317 (64.8)	12,455 (57.8)	8,528 (50.9)	9,821 (48.2)
공 산 품	2,614 (6.7)	3,492 (14.4)	3,113 (17.6)	2,929 (11.7)	3,680 (17.1)	2,474 (14.8)	3,486 (17.5)
합 계	39,585 (100.0)	24,246 (100.0)	17,603 (100.0)	25,154 (100.0)	21,521 (100.0)	16,780 (100.0)	20,436 (100.0)
구 분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농 산 물	7,078 (21.9)	8,151 (19.0)	13,041 (23.0)	11,222 (13.3)	12,562 (10.4)	15,695 (8.7)	24,336 ^a (9.5)
수 산 물	5,755 (17.7)	7,293 (17.0)	12,474 (20.0)	13,090 (15.5)	24,050 (19.9)	24,738 (13.7)	37,536 (14.7)
광 산 물	13,681 (42.2)	18,018 (42.0)	15,877 (28.0)	16,446 (19.5)	21,917 (18.1)	27,646 (15.3)	34,195 (13.4)
공 산 품	5,871 (18.2)	9,439 (22.0)	15,310 (27.0)	43,610 (51.7)	62,322 (51.6)	112,372 (62.3)	159,684 (62.4)
합 계	32,835 (100.0)	42,901 (100.0)	56,702 (100.0)	84,368 (100.0)	120,851 (100.0)	180,450 (100.0)	255,751 (100.0)
구 분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농 산 물	16,921 (4.7)	21,607 (4.3)	29,748 (4.2)	30,056 (3.0)	30,992 (2.9)	52,994 (2.9)	101,237 (3.1)
수 산 물	52,834 (15.0)	50,856 (10.2)	66,052 (9.4)	82,324 (8.2)	102,983 (7.6)	137,467 (7.6)	233,508 (7.2)
광 산 물	37,612 (10.3)	41,005 (8.2)	51,955 (7.4)	52,059 (8.2)	47,207 (3.4)	32,234 (1.8)	49,417 (1.5)
공 산 품	251,175 (70.0)	386,940 (77.3)	555,056 (79.0)	839,369 (83.6)	1,162,855 (86.0)	1,584,268 (87.7)	2,872,750 (88.2)
합 계	358,592 (100.0)	500,408 (100.0)	702,811 (100.0)	1,003,808 (100.0)	1,352,037 (100.0)	1,806,963 (100.0)	3,256,912 ^a (100.0)
구 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농 산 물	131,063 (2.6)	175,984 (3.2)	221,746 (2.7)	319,721 (3.2)	506,422 (4.0)	518,881 (3.5)	458,936 (2.6)
수 산 물	250,489 (5.3)	388,378 (7.2)	518,556 (6.4)	669,218 (6.7)	690,322 (5.4)	855,539 (5.7)	759.5 (4.3)
광 산 물	78,649 (1.7)	71,747 (1.3)	91,412 (1.1)	85,180 (0.8)	93,850 (0.7)	110,569 (0.7)	135,578 (0.8)
공 산 품	4,252,703 (90.2)	4,791,241 (88.3)	7,283,164 (89.8)	8,969,882 (89.3)	11,420,469 (89.8)	13,570,464 (90.1)	16,150,824 (92.3)
합 계	4,712,904 (100.0)	5,427,351 (100.0)	8,114,879 (100.0)	10,046,457 (100.0)	12,711,063 (100.0)	15,055,453 (100.0)	17,504,862 ^a (100.0)

섬유류를 주축으로 한 경공업분야의 개발로 1차 5개년 계획이 끝난 1966년도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는 工產品이 62.4%, 농·수·광산물이 37.6%로 1차상품에서 2차상품으로의 수출상품 구조

개선이 이행되었다. 그후 산업구조의 근대화, 고용증대 및 기술개발, 노동생산성 提高에 역점을 둔 2차 5개년계획이 끝난 1971년도에는 전체 수출에서 점유하는 공산품비중이 86.0%로 提高

되었으며, 생산의 한계성을 드러낸 1차상품의 수출비중은 상대적으로 14.0%로 크게 떨어졌다.

3차 5개년계획이 시작된 1972년의 경우, 공산품비중은 87.7%로 계속 확대된 반면 1차상품은 12.3%로 계속 축소되었다. 이때부터 비로소 우리나라의 수출도 비록 저임금에 바탕을 둔 경공업(주로 섬유류)제품 위주의 수출이긴 하지만 공산품수출국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3차 5개년계획의 최종연도인 1976년을 보면 공산품비중이 89.8%로 확대되었으며 1차상품은 10.2%로 절감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금액면에서 농산물 및 수산물 수출이 크게 신장

세를 보였는데 이는 농산물수출증 일담배비중의 증가와 원양어업의 호조에 기인한 것이다.

4차 5개년계획의 시작연도인 1977년에는 공산품의 점유비중이 89.3%로 전년도에 비해 0.5%가 감소되었으나 그 이후 매년 1차상품의 비중은 감소되고 있는 반면 공산품의 비중은 증가되고 있다. (<表 A-4> 참조)

여기서 1977년 이후 공산품 수출액중 輕工業製品 對 重化學製品의 輸出占有比率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輕工業：重工業

• 1977년— 60 : 40

<表 A-5> 10大輸出商品

(單位：百萬弗，%)

順位	1965				1970			
	品目	金額	構成比	品目	金額	構成比		
1	의류	19.0	10.9	織維類	341.1	40.8		
2	합판	18.9	10.8	合板	91.9	11.0		
3	아연鍍鐵板	11.1	6.3	假髮	90.1	10.8		
4	綿織物	9.4	5.4	鑛産物	31.8	5.9		
5	活鮮魚	7.6	4.3	電子製品	28.8	3.5		
6	철광석	7.0	4.0	菜蔬類	19.5	2.3		
7	生絲	6.7	3.8	신발類	17.3	2.1		
8	증석	6.6	3.8	煙草類	13.5	1.6		
9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용絲	5.6	3.2	鐵鋼製品	13.4	1.6		
10	오징어	4.8	2.7	金屬製品	12.2	1.5		
	小計	96.7	55.2	小計	660.6	77.1		
	總計	175.1	100.0	總計	835.2	100.0		

順位	1975				1980			
	品目	金額	構成比	品目	金額	構成比		
1	織維類	1,840.2	36.2	織維類	5,014.3	28.6		
2	電子製品	453.0	8.9	電子製品	2,003.8	11.4		
3	鐵鋼製品	231.4	4.6	鐵鋼製品	1,854.1	10.6		
4	合板	208.1	4.1	신발類	904.2	5.2		
5	신발類	191.2	3.8	船舶 및 水上構造物	617.6	3.5		
6	遠洋漁類	183.4	3.6	機械類	606.3	3.5		
7	船舶類	137.8	2.7	合成樹脂製品	570.8	3.3		
8	金屬製品	124.1	2.4	고무 및 製品	493.5	2.8		
9	石油製品	95.4	1.9	木材 및 木製品	471.7	2.7		
10	合成樹脂製品	88.3	1.7	金屬製品	443.1	2.5		
	小計	3,552.9	69.9	小計	12,979.4	74.1		
	總計	5,081.0	100.0	總計	17,504.9	100.0		

- 1978년— 58 : 42
- 1979년— 55 : 45
- 1980년— 52 : 48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중화학분야로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은 77년 이후 전자, 철강, 금속, 기계류, 화학제품, 건축자재 등의 수출이 크게 성장한 반면, 섬유류를 주축으로 한 경공업제품의 경우 主市場인 미국, EC 등 선진국시장에서의 강력한 수입규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상품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하여, 자유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게 시장쉐어를 상실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表 A-5> 참조)

3) 地域別 輸出現況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 수는 1960년대 초의 30여개국에서 70년에는 103개국, 75년에는 120

개국, 80년에는 170개국으로 확대되어 이제는 일부 공산국을 제외한 전세계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지역별 수출경향도 美·日市場 일변도에서 점차 유럽, 남미, 아프리카, 대양주 등으로 수출 비중이 확대되어 80년도에는 각주가 2억불 수출을 돌파하였다.

각 주별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 A-6> <表 A-7>참조)

I. 아시아

70년대 年平均輸出增加率이 36.9%로서 1973년 이후 우리나라 제 1의 수출지역이 되고 있는 데 이는 중동시장의 급속한 규모확대에 기인한 바 크다.

II. 유럽

<表 A-6> 地域別 輸出實績

(單位: 百萬달러, %)

	總 計		아 시 아		유 럽		북 미		남 미		아프리카		대 양 주		기 타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1960	32.8	100.0	23.9	72.8	4.3	13.1	3.6	11.1	—	—	—	—	—	—	1.0	3.0
1965	175.1	100.0	85.8	49.0	21.4	12.2	64.5	36.8	0.1	0.1	2.1	1.2	1.2	0.7	—	—
1970	8,352	100.0	316.0	37.8	76.3	9.1	418.1	50.1	0.8	0.1	17.1	2.1	6.8	0.8	—	—
1975	5,081.0	100.0	2,052.9	40.4	936.7	18.4	1,763.4	34.7	18.9	0.4	200.5	4.0	86.2	1.7	22.5	0.4
1980	17,504.9	100.0	7,319.3	41.8	3,115.6	17.8	5,205.8	29.7	236.4	1.4	758.9	4.3	281.7	1.6	587.2	3.4
前年比 增加率	16.3		14.8		9.8		4.8		56.6		52.2		40.1		2,035.3	
年平均 增加率	35.6		36.9		44.9		28.7		76.6		46.1		45.1		76.5	

<表 A-7> 10大 輸出 國家

(單位: 百萬弗, %)

順位	1965				1970				1975				1980			
	國 名	輸出額	構成比		國 名	輸出額	構成比		國 名	輸出額	構成比		國 名	輸出額	構成比	
1	미 국	61.7	35.2		美 國	395.1	47.3		美 國	1,536.2	30.2		美 國	4,606.6	26.3	
2	일 본	44.0	25.1		日 本	236.2	28.3		日 本	1,292.9	25.5		日 本	3,039.4	17.4	
3	월 남	14.8	8.5		홍 룡	27.5	3.3		西 獨	312.2	6.2		사 우 디	946.1	5.4	
4	홍 룡	10.8	6.2		西 獨	27.3	3.3		캐 나 다	197.3	3.9		아라비아	875.5	5.0	
5	스 웨 덴	5.1	2.9		캐 나 다	19.5	2.3		홍 룡	181.9	3.6		홍 룡	823.3	4.7	
6	타 이	4.3	2.4		화 란	13.1	1.6		英 國	161.7	3.2		英 國	572.5	3.3	
7	화 란	3.9	2.2		英 國	13.0	1.6		화 란	128.9	2.5		인 도	365.6	2.1	
8	영 국	3.6	2.1		越 南	12.7	1.6		이 란	125.6	2.5		네델란드	349.5	2.0	
9	벨 기 에	3.3	1.9		싱 가 폴	11.0	1.3		사 우 디 아	91.1	1.8		캐 나 다	343.4	2.0	
10	서 독	3.2	1.8		스 웨 덴	7.8	0.9		호	63.0	1.2		프 랑 스	291.2	1.7	
	小 計	154.7	88.3		小 計	764.0	91.5		小 計	2,871.5	89.1		小 計	12,213.1	69.8	
	總 計	175.1	100.0		總 計	835	100.0		總 計	3,225.0	100.0		總 計	17,50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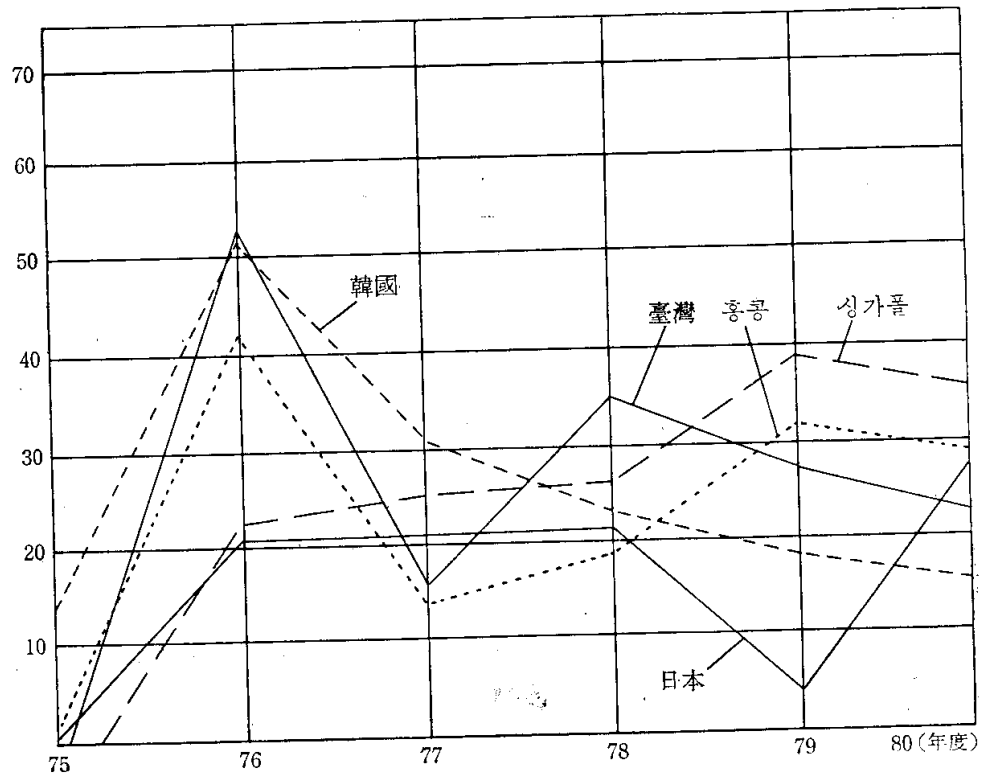
70년대 年平均增加率 44.9%로 급속한 확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시장 잠재력이 큰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그런데 75년 이후 수출비중이 정체되어 있고, 특히 80년도 후반부터 對 EC통화에 대한 원貨의 高評價로 인하여 서독, 이태리, 화란 등에 대한 수출이 극히 부진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

Ⅲ. 北 美

70년대 年平均增加率 28.7%를 기록하였으나 총수출에서 점하는 비중은 70년의 50.1%에서 75년에는 34.7%, 80년에는 29.7%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출시장 多邊化 노력에 따른 상대적 결과라 할 수 있다.

Ⅳ. 南 美

〈表 A-8〉 主要競爭國과의 輸出比較



(單位：百萬달러, %)

		'75	'76	'77	'78	'79	'80
韓 國	金 額	5,081	7,715	10,047	12,711	15,505	17,505
	增 加 率	13.9	51.8	30.2	26.5	18.4	16.3
臺 灣	金 額	3,301	8,155	9,349	12,682	16,103	19,766
	增 加 率	△4.0	58.8	14.6	35.7	27.0	22.8
홍 콩	金 額	6,019	8,526	9,630	11,461	15,190	19,707
	增 加 率	1.0	41.7	13.0	16.0	32.6	29.7
싱 가 폴	金 額	5,376	6,585	8,241	10,134	14,233	19,379
	增 加 率	△8.1	22.5	25.2	23.0	39.2	30.2
日 本	金 額	55,817	67,305	81,083	98,353	102,299	130,499
	增 加 率	8.5	30.6	20.5	21.3	4.0	27.6

70년대 年平均增加率 76.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비중면에서도 70년의 0.1%에서 75년에는 0.4%, 80년에는 1.4%로 절대액은 적지만 급속한 확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시장개척의 적극화에 따른 결과이다.

V. 아프리카

70년대 年平均增加率 46.1%로 규모면에서도 7억 6천만 달러에 달하여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중도 70년의 2.1%에서 75년에는 4.0%, 80년에는 4.4%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VI. 大洋洲

70년대 年平均增加率 45.1%로 남미, 아프리카와 함께 신 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비중면에서 70년의 0.8%에서 75년에는 1.7%로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정체현상을 보여 80년에는 1.6%를 기록하였다. 세계 최대의 원모생산 및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교역증대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지역이다.

그러므로 중남미, 아프리카와 함께 무역과 자원정책의 연결화방안이 요망되는 지역이라 하겠다.

4) 主要競爭國과의 比較

70년대 초·중반에 걸쳐 수출신장율은 팔목할 만하여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앞서 있었다.

그러나 78년부터 그 신장율이鈍化되기 시작하여 대만 등 경쟁국에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79년에는 대만이 27.0%, 홍콩이 32.6%, 싱가포르가 39.2% 등으로 수출호황을 누린 반면 우리나라는 18.4%의 신장에 그쳐 수출경쟁력의 전반적 劣位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출규모면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77년에 100억불 달성을 계기로 대만의 93억불보다 앞섰으나 78년에 127억불로서 동일수준에 달했다가, 79년에는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11억불 많은 161억불의 기록을 세웠으며 또한 80년에도 우리나라의 175억불에 비해 대만은 22억불 많은 197억불을 기록함으로써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表 A-8> 참조)

5) 世界輸出에 대한 韓國輸出의 比重

70년대 한국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35.6%로 세계수출증가율 20.6%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제 세계수출에 대한 한국수출의 비중 추이를 보면 70년에 0.30%, 75년에 0.63%, 79년에 1.00%, 80년에 0.96%를 기록하여 79년 이후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80년 세계수출증가율은 21.2%인데 비해 한국은 16.3%로 저조하며 수출순위면에서 세계 제20위(산유국 제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表 A-9> 및 <表 A-10> 참조)

6) 問題點 및 政策方向

① 問題點

a) 輸出競爭力 弱화

임금 및 물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수출단가 상승율이 75년 이후 경쟁국에 비해 가장 높다. 뿐만 아니라 품질, 신용, 애프터 서비스 등 非價格競爭面에서도 취약한 상태이다.

b) 輸出商品高度化 未備

加工도가 높은 제품보다 단순조립제품 등 加工도가 낮은 부분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수출에 따른 輸入誘發效果가 커서 자금압박의 요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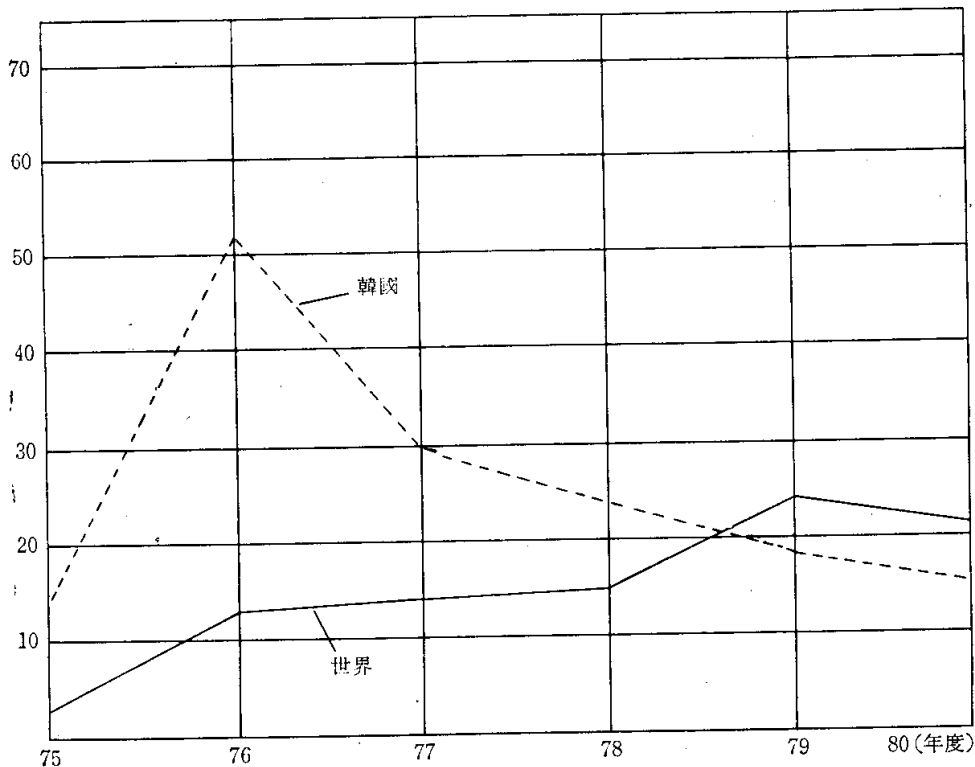
<表 A-9> 世界貿易上 韓國貿易比重

(單位: 百萬달러, %)

比較國 年度	韓 國			世 界			占 有 率 (%)		
	輸 出	輸 入	計	輸 出	輸 入	計	輸 出	輸 入	計
1960	33	344	377	113,000	119,200	232,200	0.03	0.29	0.16
1965	175	463	638	164,400	174,200	338,600	0.11	0.27	0.19
1970	835	1,984	2,819	282,100	296,600	578,700	0.30	0.67	0.49
1975	5,081	7,274	12,365	795,700	815,740	1,611,440	0.63	0.89	0.72
1980	17,505	22,292	39,797	1,827,400	1,875,400	3,702,800	0.96	1.19	1.07

資料: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76. 3., 1980. 4~5

〈表 A-10〉 世界와 韓國의 輸出伸張率 比較



(單位: %)

		'75	'76	'77	'78	'79	'80
世界(A)	金額	3.7	13.4	15.0	16.1	25.4	21.2
韓國(B)	金額	13.9	51.8	30.2	26.7	18.4	16.3
B/A(金額) %		3.8	3.9	2.0	1.7	0.7	0.8

c) 技術開發 未備

기술이 일본을 통하여 우회 도입되었고, 기술 인력양성을 등한시함으로써 품질고급화가 지연되고 있다.

d) 輸出地域 偏重

점차 수출지역의 多邊化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美·日 偏重度는 아직 50%에 가까우며, 美·日의 수입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수출 문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 輸出環境의 惡化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수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출을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불안으로 인하여 對外信認度가 하락되었다.

국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油價불안

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소비감퇴, 후진 개발도상국의 강력한 추격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② 政策方向

a) 輸出競爭力 強化의 持續化

물가안정, 금리인하 등으로 원자상승요인을 배제하고 換率實勢化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b) 産業構造의 均衡的 發展

基礎産業育成으로 원자재 수입유발의 확대를 억제해야 하며, 비교적 경쟁력이 강한 경공업제품의 성급한 斜陽化를 시정해야 하며, 산업고도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c) 品質提高促進

TQC·ZD 운동 등 품질관리운동의 활성화와 기술개발투자 확대, 개발비지원책 강구 등 기술 도입 및 개발에 적극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d) 輸出環境改善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수출에 대한 재인식, 노사협조체제강구, 경제 및 통상의외의 확대가 필요하다.

(2) 輸出이 國民經濟에 미친 效果分析

1960년대 이후 輸出主導型 經濟開發戰略을 채택한 우리나라는 괄목할 만한 수출신장률을 지속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 역시 10%를 넘는 고도성장을 유지하여 왔다.

수출은 생산 및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소득을 증대시킨다. 이와같은 수출의 국민경제에 대한 寄與度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生産迂廻度가 큰 기간산업 및 중화학공업의 확충이 필요하다 하겠다.

① 雇傭誘發效果

總就業人口에 대한 수출의 기여율은 보면 100억불수출 달성년도인 1977년 20.3%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78년 이후 둔화되어 15%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78년 이후 수출증가율이 둔화된 결과라 하겠다.

한편 수출 100만불당 취업유발인원이 75년 이후 계속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계화에 따른 저급노동력 수요의 감소와 달러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表 A-11〉 참조)

② 所得誘發效果

수출에 의한 소득유발액은 75년에 비해 80년에는 두배에 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화가득률은 75년 이후 62%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수출에 의한 소득유발액의 GDP에 대한 비중을 보면 75년의 15.5%에서 꾸준한 증가를 보여 78년에는 20.5%의 높은 기여율을 나타내었으며, 79년에 주춤하긴 하였으나 77년 이후 연평균 20%선의 높은 기여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수출의 국민소득에 대한 기여도가 그만큼 높은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表 A-12〉 참조)

③ 生産誘發效果

수출에 의한 생산유발액은 75년의 4조6천6십

〈表 A-11〉 雇傭誘發效果

구 분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全産業	총 취업인구(千名)	11,830	12,556	12,929	13,490	13,664	13,875
	수출연관인구(千名)	1,645	2,193	2,628	2,023	1,934	2,081
	비 중(%)	13.9	17.5	20.3	15.0	14.2	15.1
製造業	총 취업인구(千名)				3,016	3,126	2,853
	수출연관인구(千名)				1,204	1,157	1,248
	비 중(%)				39.9	37.0	43.7
수출 100만불당 취업유발인원 ('75가계)(名)		0.67	0.66	0.66	0.45	0.43	0.41
수출 100만불당 취업유발인원 (경상)(名)		324	284	262	159	128	119

〈表 A-12〉 所得誘發效果

구 분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총 수출액('75가계, 10억원): A	2,459	3,343	3,976	4,544	4,504	5,040
GDP("): B	9,952	11,333	12,472	13,885	14,870	14,363
소득유발액("): C	1,544	2,075	2,500	2,843	2,783	3,079
수출에 대한 비율(외화가득율, C/A%)	62.8	62.1	62.9	62.6	61.8	61.1
GDP에 대한 기여도(C/B%)	15.5	18.3	20.0	20.5	18.7	21.4

〈表 A-13〉 生産誘發效果

구 분 \ 연 도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총 수출액('75가격, 10억원) : A	2,459	3,343	3,976	4,544	4,504	5,040
총 생산액(") : B				30,199	32,281	30,604
생산유발액(") : C	4,606	6,292	7,463	8,564	8,508	9,550
수출에 대한 비율(C/A배) (생산유발도)	1.87	1.88	1.88	1.88	1.89	1.89
생산에 대한 기여도(C/B%)				28.4	26.4	31.2

〈表 A-14〉 輸入誘發效果

구 분 \ 연 도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총 수출액('75가격, 10억원) : A	2,459	3,343	3,976	4,544	4,504	5,040
총 수입액(") : B				6,849	7,619	7,010
수입유발액(") : C	915	1,263	1,476	1,701	1,720	1,961
수출에 대한 비율(C/A%) (수입유발도)	37.2	37.9	37.1	37.4	38.2	38.9
수입에 대한 비중(C/B%)				24.8	22.6	28.0

〈表 A-15〉 國際收支改善效果

구 분 \ 연 도	1978	1979	1980
總外貨受入(백만弗) : A	17,735	20,091	23,076
總外貨需要(") : B	18,820	24,242	28,601
輸出에 의한 外貨조달 : C	12,711	14,705	17,241
外貨受入에 대한 비율 (C/A%)	71.7	73.2	74.7
外貨需要에 대한 비율 (C/B%)	67.5	60.7	60.3

억원에서 80년에는 두배를 넘어서는 9조5천5백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80년의 수출의 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31.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의 생산에 대한 기여도 또한 지대한 것임을 보여준다. (〈表 A-13〉 참조)

④ 輸入誘發效果

수출총액에 대한 수입유발액의 비율은 75년 이후 37~38%선에서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表 A-14〉 참조)

⑤ 國際收支改善效果

78년 이후 수출에 의한 외화조달액의 총외화수입에 대한 비율을 보면 70%이상의 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외화수요에 대한 비율도 78년에 비해 감소추세를 보이

긴 하나 6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제수지의 개선에 있어서도 수출의 역할이 큰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表 A-15〉 참조).

B. 韓國의 外國人投資導入制度和 實績

1. 韓國의 外國人投資導入制度

(1) 外國人國內投資의 範圍

外資는 일반적으로 광의의 외자와 협의의 외자로 나뉘어진다. 前者는 공공자금으로부터 나오는 무상원조를 비롯하여 해외저축이 국외로 이동하는 모든 형태를 총괄하는 개념이며, 後者의 경우는 외국인의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차관과 기술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은 모두 민간자본인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협의의 외자유형의 하나로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즉 외국인투자는 국내법인의 주식을 외국인이 인수·취득하고 그 대금을 對外支拂手段으로 불입하는 것으로 이는 그 성질에 따라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로 구분된다. 직접투자는 외국인이 주식의 인수와 함께 회사의 경영에 직접참여하는 형태이며, 증권투자는 외국인이 경영참여에는 관련이 없이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이다.

(2) 外國人投資導入制度의 變遷

① 關係法令의 整備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투자도입을 위한 법규는 1960년 1월 1일에 제정공포된 「外資導入促進法」이 최초의 것인데, 이는 국민생활의 向上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자원의 개발 사업을 개시, 확장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자본투자를 유인, 촉진, 또는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법은 1966년 3월 3일 「外資導入法」으로 통합정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 목적은 경제의 자립과 그 건전한 발전 및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적절히 활용, 관리함에 두고 있다. 한편 도입된 외자에 대하여 세계상의 혜택등 광범위한 이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외자도입에 관련된 구체적 기준을 法定化하지 않고 行政指導로 처리토록 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② 外國人投資業務 擔當機構의 變遷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위한 외국인투자업무의 담당기구는 60년 「外資導入促進法」의 제정과 더불어 61년의 物動計劃局, 物資導入局, 62년에는 經濟協力局등 새로운 局의 설치를 통하여 외국인투자업무를 처리해왔다. 그러다가 66년 경제개발계획의 진행에 따라 投資振興官室이 설치되어 외국인투자유치업무가 활성화 되었고 66년 「外資導入法」의 제정과 함께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73년 1월에는 다시 投資振興局으로 확대개편되어 외국투자유치확대를 위한 정책과 유치활동을 전개 외국인투자기업의 보호 및 사후관리업무에 원할을 기하였다. 한편 70년에 제정된 「외국인의 투자에 관한 事務取扱 一元化 規程」에 따라 재무부등 각부처 駐在官制度를 발족시켜 經濟企劃院에 설치되었다.

76년 6월 경제기획원의 직제개편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및 인가업무는 投資振興課에서 處理하고 사후관리업무는 外資管理局에서 관장하고 있다.

(3) 現行 外國人投資導入制度 및 認可節次

① 外國人投資에 關한 一般指針

정부는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면에 있어서 개설

체제를 지향하고 外換의 자유화 및 대내직접투자, 해외투자, 증권등의 段階的인 자본자유화 방향에 따라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80년 9월 25일 「外國人投資擴大方針」을 발표하고 외국인투자에 관련하는 제한적인 허용방침이나 각종규제를 대폭 緩和, 시행해 오고 있다. 「外國人投資에 關한 一般指針」은 81년 6월 9일자 經濟企劃院告示 제46호로 공고되었는 바 이로써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본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인지토록 하자는 의도이다.

가. 適格事業

a) 국내기업만으로는 사업추진이 곤란한 대규 모장치산업

b) 기계공업

c) 금속공업

d) 전자공업

e) 전기공업

f) 화학공업

g) 에너지관련산업

h) 국내부존자원의 개발활용에 기여하는 사업

i) 식품 제조사업

j) 의약품등 제조사업

k) 유통산업

l) 서비스 산업

m) 기타 경제기획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投資規模

외국인투자규모의 최저한도를 미화 10만달러 이상으로 한다.

다. 投資比率

외국인투자비율은 내외국인투자당사자의 합의된 바에 의하되 外國人持株率을 50%이상 100%까지 허용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고도의 선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b) 投資先의 다변화에 기여하는 사업

c) 僑胞投資事業

d)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

e)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

f) 소요자금, 기술축적 및 初期危險負擔 등으로 내국인과의제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g) 일정기간이내에 외국인의 소유주식을 과반수 이하로 引下하는 조건의 투자사업

h) 기타 경제기획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租稅減免의 差等化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투자가에 대한 외자도입법상 租稅減免은 투자사업의 국민경제발전 및 사회복지에의 奇與度에 따라 그 혜택에 차등을 둔다.

마. 元金回收에 대한 制限廢止

종속 원본회수에 대한 제한규정으로 영업개시 2년이후에 원금회수가 가능하며, 외환사정을 감안, 연간회수액을 20%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었다.

바. 外國人土地取得에 對한 規制를 伸縮性있게 運用

외국인토지취득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성있게 운용하도록 하였다.

사. 全産業에 對한 外國人投資細部指針

외자도입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韓國標準産業分類(經濟企劃院告示 제 5호, 1975.12.3. 정정)에 의거, 모든 산업에 대한 外國人投資認可細部指針을 마련,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② 外國人投資에 관한 細部指針

가. 細部指針 制定의 背景

a) 開放經濟體制의 指向

우리경제의 여건은 對外指向의인 산업정책이 불가피하여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부족되는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선진국의 고도산업기술을 정착, 개발시킴으로써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외국과의 경제능력면에 있어서도 개방체제의 계속적인 추진으로 대외경제협력력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투자도입 허용업종을 파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네가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전환되는 경우 자체자유화의 意義를 가지게 될 것이다.

b) 外國人投資導入擴大의 効果

외국인투자가에 대하여 국내에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가능한 부문과 제한허용요령을 事前에 公知시켜 국내기업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對韓投資를 활발히 전개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c) 이상의 제정배경하에서 세부지침은 개정된 「外國人投資에 관한 一般指針」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외국인투자 적격사업의 選定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와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다.

나. 細部指針의 內容

a) 외국인투자 허용업종의 고시

외국인투자허용적격사업을 韓國標準産業分類(經濟企劃院告示 제 5호 1975.12.3)의 細細分類(제 5 단위숫자)에 의거 전산업에 대해 업종별로 구분하여 허용요령을 고시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細細分類에 의한 855업종 중 本細部指針에서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적격사업은 427종이다. (<表 B-1> 참조)

제조업부분의 외국인투자허용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제조업종 80%를 허용하였으며 특히 商2. 部의 경우에는 所管事業 371업종중 328업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토록 조치하였다.

b) 業種別外國人許容投資比率의 明示

① 第1類業種(장려업종)

외국인허용투자비율은 100%까지 허용하는 사업과 50%까지 허용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第1類業種은 외국인에게 持株率 100%까지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으로 이 범주에 속하는 사업의 선정기준은

○ 고도의 선진기술을 수반하여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기여하는 사업

○ 국내낙후사업으로서 산업정책상 조속한 개발이 요청되는 사업

○ 소요금액, 기술축적 및 위험부담 등으로 내국인과 제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 교포투자사업 및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

○ 投資先의 다변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② 第2類業種(일반업종)

〈表 B-1〉 外國人投資 許容業種 內譯

產 業 別	業種總數	外國人投資許容業種			外國人投資未許容業者	許容比率(%)
		第1類業種	第2類業種	計		
1. 農業, 수림업, 林業 및 漁業	32	1	3	4	28	12.5
2. 鑛業	25	1	16	17	8	68.0
3. 製造業	400	51	269	320	80	80.0
4. 電氣, 개스 및 水道 事業	4	—	1	1	3	25.0
5. 建設業	18	—	3	3	15	16.6
6. 都小賣 및 飲食宿泊業	113	1	64	65	48	57.5
7. 運輸, 倉庫 및 通信業	47	2	5	7	40	14.9
8. 金融, 保險, 不動產 및 用役業	64	—	8	8	56	12.5
9. 社會 및 其他「서어비스」業	151	—	1	1	150	0.1
10. 分類不能產業	1	—	1	1	—	—
合 計	855	56	371	427	428	49.9

第2類業種은 외국인에게 持株率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으로 외자도입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기준에 부합되는 사업으로서 第1類業種에 該當되지 않는 사업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外國人投資에 관한 一般指針(經濟企劃院告示 제46호 81.6.9)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持株率 50%이상 허용하는 사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외국인이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c) 租稅減免業種의 差等化

㉑ 差等適用內容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에 대한 외자도입법상의 租稅減免은 투자사업의 국민경제발전 및 사회복지에의 기여도에 따라 그 혜택에 차등을 두어 외국인투자유치확대와 내국기업에의 배려에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첫째, 全部減免은 외자도입법 제15조상의 租稅減免惠澤을, 둘째, 一部減免은 제15조상의 혜택중 關稅免除의 혜택만을 부여하며 셋째, 完全排除는 이러한 租稅惠澤이 모두 排除되는 경우를 말한다.

㉒ 差等適用區分

全部減免의 경우는 高度의 선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우선투자유치대상사업부문의 바대규모 장치산업, 기계, 금속공업 및 전기, 전자공업부문이 이에 속한다.

一部減免은 외국인투자유치가 소망스러운 산업부문으로 식품, 의약품 등 제조업이나 유통

및 서어비스 산업이 이에 속하며, 完全排除는 국내기존기업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경쟁하게 되는 유통산업중 일반도소매업이 여기에 속한다.

d) 其他事項

외국인투자허용적격사업별로 所管部處를 명시하여 외국인투자가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협의사항을 사전조사케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細部指針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투자를 허용케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다. 細部指針 施行에 따른 期待效果

외국인투자가에게 투자허용적격사업, 허용투자비율, 稅制上 優待 등을 사전인지시켜 적극적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국내기업으로 하여금 자율적·적극적 합작투자를 유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하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③ 外國人投資에 관한 優待措置 및 規制措置

가. 外國人投資에 대한 優待措置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法律上의 保障, 租稅上의 特惠 또는 其他 行政上의 支援 등이 부여되고 있다.

a) 稅制上의 特惠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外貨導入法 제15조 및 其他 稅法上에서는 다음과 같은 租稅上의 減免惠澤이 부여되고 있다.

㉑ 法人稅(또는 소득세)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持分의 비율에 따라 稅法上 최초의 課稅起算日로 부터

5년간은 全額免除되고, 그 후 3년간은 減額된다.

㉑ 關稅, 特別消費稅 및 附加價値稅

외국인투자자가 출자의 목적물로서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關稅, 特別消費稅 및 附加價値稅의 全額을 免除한다.

㉒ 財産稅 및 取得稅

당해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取得稅와 財産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持分의 비율에 따라 取得稅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날(등록이전의 취득분도 면제가능)로부터, 財産稅는 地方稅法이 의거한 최초의 課稅起算日(등록전후의 취득분도 면제가능)로부터 5년간은 전액면제되며, 그 잔여기간만료일로부터 3년간은 50%가 감액된다.

㉓ 配當所得稅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持分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배당금에 대한 所得稅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은 全額免除되고, 그後 3년간은 50%가 減額된다.

㉔ 勤勞所得稅

所得稅法은 외국인투자기업체 또는 기술도입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중 종합소득금액으로부터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전액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일 또는 기술도입인가일로부터 5년간은 전액면제된다.

이상의 租稅上의 혜택을 요약하면 <表 B-2>와 같다.

나. 法律上의 保障

外貨導入法 제14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모든 재산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同法 제17조에서는 외국인의 투자기업과 외국투자자는 법률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위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同法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持分의 매각에 따르는 출자금회수의 대외선금은 보장된다고 明示하고 있다. 그밖에 차관 및 기술도입의 경우는 同法 제20조에서 차관계약에 의한 원리금 또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代價는 선금當時의 인가내용에 따라 대외선금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其他支援

a) 元金回收制限廢止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확대를 위하여 外資導入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매각대금과 출자금회수에 대하여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대외선금액도 국내외환사정을 감안, 매 1년에 출자액 또는 매각대금의 20%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외국인의 대한투자를 적극유치하고 있다.

b) 外國人土地取得에 關한 規定의 伸縮性있는 運用

정부는 외국인들의 안전한 對韓投資活動을 보

<表 B-2> 租稅上의 惠澤

租稅內容	減免惠澤
가. 法人稅(또는 所得稅)	(1) 最初の 課稅起算日로부터 5年間 全額免除 (2) 그後 3年間 50% 減額
나. 關稅, 特別消費稅, 附加價値稅 다. 財産稅, 取得稅	資本財導入時 全額免除 (1) 財産稅: ㉑ 最初の 課稅起算日로부터 5年間: 全額免除(登錄이전의 取得분도 免除可能) ㉒ 殘餘期間滿了日로부터 3年間: 50% 減額 (2) 取得稅: 外國人投資企業으로서 登錄된 날로부터 財産稅와 同一 惠澤 賦與
라. 配當所得稅	(1) 營業開始後 5年間: 全額免除 (2) 그後 3年間: 50% 減額
마. 勤勞所得稅	外國人投資企業 登錄日 또는 技術導入認可日로부터 5年間: 全額免除

장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위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그 취득에 관한 규제를 신축성있게 운영하고 있다.

c) 各種支援事項

한편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인가한 후에도 공장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공단입주, 편의시설(utilities)의 확보, 통신시설확보 등에 행정지원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輸出入許可特惠, 關稅還給制度上的 편의제공, 도입자본재 관의 우선조치, 각종금융지원등 제반행정상의 지원을 하여 주고 있다.

② 外國人投資에 대한 規制措置

이상과 같은 유인정책과 관련된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사업, 전매사업이나 신문, 방송 등과 일부제조사업에만 외국인투자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기업에 대한 직접규제 이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외국기업의 원활한 활동에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는 생산에 관련된 기계 및 원료수입의 自由比率이 높지 않다는 점과 외국자본의 流出入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금융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인센티브(incentive)면에서도 외국에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크지 않고 다른 중도극과 비슷하게 제한적이며 규제내용도 또한 비슷하므로 투자유인에 지장을 주지는 않고 있다.

(4) 外國人投資의 認可節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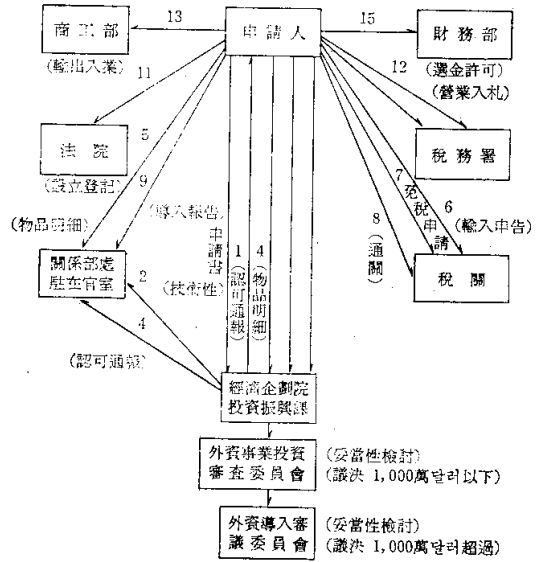
① 申請節次

가. 申請書提出

외국인투자인가신청은 다음의 書類를 5부씩 첨부하여 經濟企劃院 經濟協力局 投資振興課에 제출하여야 한다. (外資導入法施行規則 제3조)

- a)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할 기업의 사업계획서
 - b) 합작투자계획서 또는 주식이나 지분을 인수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 c)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투자인가를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하다.
- d) 외국투자자의 국적증명서
 - e) 주식 또는 持分을 발행하는 기업의 정관
 - f) 외국인의 출자 목적물로서 도입하는 外資明細書

<表 B-3> 外國人投資認可節次



외국인투자의 인가절차를 圖示하면 <表 B-3>과 같다.

나. 申請書檢討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經濟企劃院은 各種在官을 통해 關係部處에 신청사업내용에 대한 경제적·기술적인 타당성검토를 의뢰한다. 關係部處는 인가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20일 이내에 回報하여, 100萬弗미만 투자사업의 경우는 10일 이내에 回報토록 되어 있다.

回報를 접수한 경우 經濟企劃院長官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검토한 후 적격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外資事業投資審查委員會의 심사를 거쳐 經濟企劃院長官이 인가한다. 다만 투자규모가 1,000만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外資導入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經濟企劃院長官이 인가한다.

다. 認可

인가는 經濟企劃院長官이 인가통지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며 인가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신청인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 資本財導入物品의 確認

외국투자자가 출자의 목적물로서 자본재를 도입키 위해서는 經濟企劃院의 승인을 받은 導入物品明細書에 主務部長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資本財導入物品明細書에 物品導入豫定計劃書, 其他關係證書類를 添付하여

關係部處擔當官에게 제출한다.

다. 確認된 資本財의 通關

확인된 자본재를 도입할 때에는 稅關에 輸入申告書, 해당물품의 送狀, 包狀明細書, 資本財導入物品明細確認書, 外國人投資許可書, 實需要者證明을 添付하여 輸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자가 인가를 받아 도입한 자본재에 대하여는 關稅 및 特別消費稅가 면제되는데 이 때에는 導入物品明細確認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外資導入報告

투자의 목적물을 도입한 자는 當該外資가 통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通關報告書에 關係證憑書類를 添付 經濟企劃院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會社의 設立

가. 會社를 新設하는 경우

상기 제반절차가 끝나 자본재 등 외자가 도착하여 회사를 설립할 시기가 도래하면 국내외투자자는 한국의 商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며 管轄地方法院에 會社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나. 既存業體와 合作의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출자의 목적물을 도입한 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존업체 또는 국내 기존업체에 증자하는 형식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는 가격만큼 新株를 발행하게 한다. 그러므로 회사의 授權資本金이나 發行資本金이 증가하게 되므로 增資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外國人投資企業의 登錄

출자목적물을 도입하고 회사를 설립한 후에 외국투자자는 經濟企劃院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여 外國人投資企業登錄證明書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外資導入法上 규정된 所定の 租稅減免惠澤을 받는 기준이 된다.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 經濟企劃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신청에 대해 經濟企劃院은 5일내 이를 검토 外國人投資企業登錄證明書를 발급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④ 事後管理

가. 追加營業許可를 받고자 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시에는 반드시 투자금액, 인가된 영업의 내용등을 명기 등록하게 되며 영업은 이 범위내에서 영위되어야 한다.

나. 對外投資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도입된 외자의 처분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외자로 매각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인가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할 때에는 經濟企劃院長官의 허가를 받는다.

다. 出資金의 回收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모든 재산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할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는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持分을 매각할 수 있으며, 그 매각대금은 언제든지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여기서 부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이를 經濟企劃院에 신고함으로써 外資導入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당초 외국인투자자의 일체의 권리 및 업무를 승계하게 된다.

다. 配當金의 送金

정부는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持分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당한 이익의 배당금에 대하여는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송금은 출자금의 회수시와 같이 財務部의 허가를 받는데 이를 허가할 때는 인가조건 또는 상서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한다.

다. 配當金等の 再投資

외국인의 투자에 대하여는 外資導入法 제 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經濟企劃院長官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투자한 외국인투자자의 재투자에 한하여는 일정한 경우에 신고만으로 그치도록 하여 便宜를 제공하고 있다.

2. 韓國內 外國人投資實績 分析

(1) 外國人投資實績 概觀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는 1962년 8월 3일 韓國나이론(株)과 美國 Chemtex社 및 일본 Toray社間的 50대 50의 합작투자기업이 진출한 이래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여 왔다.

60년대의 외국인투자는 經濟開發戰略의 一環

으로 개발초기에 우리경제가 당면한 기간산업의 輸入代替를 위하여 필요부문에 대한 정부주도적 투자의 성격을 띠지 못하였다.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섬유, 전기, 전자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괄목할만한 투자증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외국인투자의 급증은 정부의 輸出産業育成政策에 따른 투자증가와 일본인투자에 기인하였다.

70년대 후반의 석유위기 등 경제여건악화로 감소되었으나 80년말부터 안정세를 되찾아 실질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表 B-4〉 年度別 外國人投資實績 (1980. 12. 31 現在)
(單位: 100만달러)

區 分	件 數	現存認可額
1962~66	15	23.0
1967~71	176	83.3
1972~76	495	575.7
1977	42	68.2
1978	48	148.1
1979	47	113.4
1980	36	141.1
合 計	862 (111)	1,153.8 (111.9)

註: ()內는 輸出自由地域의 實績임.
資料: 經濟企劃院

(2) 年度別 投資實績

1,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중인 1962년부터 1971년까지는 정부의 정책적인 유치로 주로 미국인에 의하여 제 1차 계획기간에는 15건에 2,300만달러, 제 2차 계획기간에는 179건에 8,300만달러 투자되었다. (〈表 B-4〉 참조)

1972년 이후 第 3 次計劃期間中에는 연평균 1억 1,500만달러로 기간중 495건에 5억7,600만달러의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1977년에는 일시적 감소를 보였으나 1978년부터 다시 증가되어 왔으며 이중 1억달러 이상이 수출자유지역에 투자되었다.

(3) 國別 投資實績

國別 외국인투자현황을 보면 천수 및 금액면에서 모두 일본이 가장 많고 다음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80년말까지 646건에 6억 1,900만불을 투자하여 총투자액의 53.7%를 點하고 미국은 131건에 2억3,500만달러로 20.4%를 차지하고 있다. (〈表 B-5〉 참조)

일본인투자는 대부분 노동집약적 가공산업분야 즉 전자부품, 섬유 및 의류, 호텔관광등에 투자하였고 미국인들은 석유, 화학, 자동차, 전자공업 등에 투자하였다.

한편 최근 유럽지역으로부터의 투자가 증대되고 있으며 IFC(國際金融公社)와 함께 외국인투자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歐洲地域의

〈表 B-5〉 國別 外國人投資實績
(1980. 12. 31 現在)

區 分	1962~71		1972~79		1980		合 計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日 本	132	49,287(46.4)	497	530,594(58.5)	17	39,236(27.8)	646	619,116(53.7)
美 國	45	37,129(34.9)	72	151,713(16.7)	14	46,499(33.0)	131	235,341(20.4)
歐 洲	10	9,493(8.9)	37	140,526(15.5)	5	33,533(23.8)	52	183,552(15.9)
西 獨	6	2,731(2.6)	11	15,817(1.7)	2	4,810(3.4)	19	23,358(2.0)
和 蘭	2	6,258(5.9)	3	72,019(8.3)	—	24,970(17.7)	5	103,247(9.0)
英 國	1	256(0.2)	6	19,446(2.1)	1	1,538(1.1)	8	21,240(1.8)
其 他	1	248(0.2)	17	33,244(3.7)	—	2,215(1.6)	20	35,707(3.1)
I F C	1	702(0.7)	7	22,086(2.4)	—	13,361(9.5)	—	36,149(3.1)
中 東	—	—	2	10,974(1.2)	—	—	2	10,974(1.0)
其 他	6	9,711(9.1)	17	50,439(5.6)	—	8,467(6.0)	—	68,637(5.9)
合 計	194	106,322	632	906,332	36	141,115	862	1,153,769

註: ()內는 總認可額에 對한 比率임.
資料: 經濟企劃院

〈表 B-6〉 産業別 外國人投資實績

(1980. 12. 31 現在)

(單位: 1,000달러)

區分 産業別	1962~71		1972~79		1980		合 計		構成比 (%)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農 水 産	10	1,195	35	12,251	1	501	46	13,947	1.2
鑛 工 業	167	93,322	541	632,656	31	100,779	739	826,757	71.7
鑛 業	1	24	12	2,884	0	0	13	2,908	0.3
製 造 業	166	93,298	529	629,772	31	100,779	726	823,849	71.4
纖維및衣類	20	13,475	51	59,258	0	0	71	72,733	6.3
化 工	21	11,676	72	180,185	6	35,512	99	227,373	19.7
肥 料	2	20,500	2	21,475	0	0	4	41,975	3.6
石 油	3	7,845	1	16,069	0	7,621	4	31,535	2.7
金 屬	13	8,980	50	42,719	5	4,512	68	56,211	4.9
機 械	20	5,323	96	84,442	5	4,995	121	94,760	8.2
電氣및電子	34	12,451	154	139,014	4	18,058	192	169,523	14.7
其 他	53	13,048	103	86,610	11	30,081	167	129,739	11.3
社會間接資本	17	11,805	56	261,425	4	39,835	77	313,065	27.1
「호텔」觀光	3	6,094	25	162,238	1	5,736	29	174,068	15.1
金 融	2	1,621	8	49,596	0	11,727	10	62,944	5.5
其 他	12	4,090	23	49,592	3	22,372	38	76,053	6.5
合 計	194	106,322	632	906,332	36	141,115	862	1,153,769	100.0

資料: 經濟企劃院

투자규모는 1967년부터 1976년까지는 총투자액의 11.0%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도에는 23.8%로서 미국과 일본의 수준으로 육박하고 있다.

(4) 産業別 投資實績

산업별로는 농수산부문이 46건에 1,400만달러로 총투자액의 1.2%에 불과한 반면 광공업은 71.7%이며 특히 제조업은 전체의 71.4%로 외국인투자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제조업중에서도 전기전자분야가 14.7%로서 중심이 되고 있으며 점차 기술집약적 산업 또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되어 가고 있다.

3차산업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호텔 및 관광에 대한 서비스부문의 투자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表 B-6〉 참조)

(5) 投資比率別 投資實績

80년말 현재 862전체의국인투자기업중 100%의 단독투자가 125건으로 합작투자방식에 의한 투자가 637건에 8억1,700만달러 합작투자중 50대50의 비율 250건으로 총투자액의 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미만의 투자비율이 24.5%

〈表 B-7〉 投資比率別 投資實績 (1980. 12. 31 現在)

(單位: 1,000달러)

區分 比率別(%)	件 數	認可金額	構成比(%)
1~49	387	283	24.5
50	250	403	34.9
51~99	100	131	11.4
100	125	337	29.2
合 計	862	1,154	100.0

資料: 經濟企劃院

를 이루고 있다. (〈表 B-7〉 참조)

(6) 投資規模別 投資實績

투자건수면에서 보면 총 862건중 500만달러이상의 투자기업은 48건에 불과하였고 10만달러 미만의 소규모투자가 225건, 10만달러 이상의 투자가 589건으로 그중 50만달러 이상 500만달러 미만인 경우가 265건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금액으로 보면 총투자액의 57.1%가 500만달러 이상이며, 50만달러이상 500만달러 미만이 35.6%를 차지하고 있어 主宗을 이루고 있다. (〈表 B-8〉 참조)

〈表 B-8〉 投資規模別 投資實績 (1980. 12. 31 現在)
(單位: 1,000만달러)

規模別	區 分	件 數	金 額	構成比(%)
10萬 弗 未 滿		225	11.9	1.0
10~50萬 弗 未 滿		324	72.6	6.3
50~500 萬弗未滿		265	410.5	35.6
500 萬 弗 以 上		48	658.8	57.1
合 計		862	1,153.8	100.0

資料: 經濟企劃院

〈表 B-9〉 僑胞投資實績 (1981. 3. 31 現在)
(單位: 100만달러)

區 分	件 數	金 額	構成比(%)
日 本	72	224.8	99.0
美 國	13	1.7	0.7
獨 逸	1	0.6	0.3
合 計	86	227.1	100.0

資料: 經濟企劃院

(7) 僑胞投資家로부터의 導入實績

코프투자실적은 총 86건에 2억2,710만달러로서 전체투자액중 19.6%를 占하고 있으며 在日僑胞에 의한 투자가 2억2,480만달러로 99%나 차지하고 있다. (〈表 B-9〉 참조)

3. 外國人投資企業의 收益率分析

(1) 元本回收實績

외국인투자기업의 출자금회수는 지금까지 모두 209건에 2억2,900만달러에 불과하다. 이중 국내 정치가 不安하던 1979년과 1980년도의 비중이 79.8%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정치상황의 변동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B-10〉 참조)

(2) 配當金 送金實績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금송금은 1980년말 현재 3억2,900만달러로 년도별로는 최근에 와서 약 4,000~5,000만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表 B-11〉 참조)
국별로는 미국기업들의 경우가 일본이나 서구기업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果實送金水準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미국기업들이 內需市場에 비교적 많이 輸出하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B-12〉 참조)

(3) 外國人投資企業의 收益率分析

〈表 B-10〉 出資金回收實績
(單位: 100만달러)

年度別	區 分	件 數	金 額	構成比(%)
1965~70		3	1	0.4
1971		3	1	0.4
1972		5	3	1.3
1973		10	4	1.8
1974		17	6	2.6
1975		10	6	2.6
1976		23	4	1.8
1977		42	11	4.8
1978		36	12	5.2
1979		41	91	39.7
1980		19	90	39.4
合 計		209	229	100.0

資料: 經濟企劃院

〈表 B-11〉 配當金 送金實績
(單位: 100만달러)

年度別	區 分	件 數	金 額	構成比(%)
1965~70		20	15	4.6
1971		16	8	2.3
1972		24	7	2.1
1973		30	15	4.6
1974		55	27	8.2
1975		64	24	7.3
1976		99	38	11.6
1977		116	49	14.9
1978		125	44	13.4
1979		123	55	16.7
1980		127	47	14.3
合 計		799	329	100.0

資料: 經濟企劃院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익율은 최근 7%이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資本費用은 차관의 평균지불이자율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80년대 이후 세계적인 고금리추세를 반영, 평균이자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하여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는 元利金償還을 수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관에 비하여 資本費用이 유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表 B-13〉 참조)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도 일부공공기관의 투자

〈表 B-12〉 國別 果實送金 推移

(單位：%)

年度別	國別	美國	日本	西歐	其他	平均
1977		24.8	2.9	10.6	2.8	7.3
1978		12.4	4.0	8.4	4.1	5.7
1979		16.1	3.8	5.2	7.8	6.2
1980		10.9	2.8	5.3	7.9	5.1

資料：經濟企劃院

〈表 B-13〉 收益率 推移

(單位：100만 달러)

區分	外國人投資總殘額	果實送金	國內再投資된配當金	果實送金率	配當率
年度	(a)	(b)	(c)	(b)/(a) _{t-1}	(b+c)/(a) _{t-1}
1972	177,423	6,659	276	5.6	5.8
1973	333,915	15,375	1,121	8.7	9.3
1974	496,649	26,842	3,432	8.0	9.1
1975	566,008	23,979	591	4.8	4.9
1976	674,720	37,741	884	6.7	6.8
1977	767,817	49,289	449	7.3	7.4
1978	883,452	44,079	10,960	5.7	7.2
1979	921,844	54,691	962	6.2	6.3
1980	977,973	46,813	1,014	5.1	5.2

註：1) 外國人投資 總殘額は 總到着額과 國內再投資額의 合計에서 元本回收額 累計를 除한 金額임.

2) t는 當該年度, t-1는 前年度

資料：經濟企劃院

가 있기는 하지만 민간투자가 대부분이므로 商業借款의 平均이자율과 比較하여 보면 果實送金率 및 배당율의 경우는 1969~73년간을 제외하고는 外國인투자수익율이 商業借款의 平均이자율보다 낮았고 최초로 들어와서는 국제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外國인투자수익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外國인투자가 직접배당금으로 송금하는 果實送金額의 투자액에 대한 비율은 商業借款의 平均이자율보다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外國인투자는 이러한 이점보다 차관도입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추가적 국민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表 B-14〉 참조)

〈表 B-14〉 商業借款의 利率 推移

(單位：100만 달러)

年 度	年末殘額1)	利子支給額2)	平均利率率 (%)3)
1967	282.0	7.9	4.9
1968	506.4	11.4	4.0
1969	814.6	23.2	4.6
1970	1,005.9	48.9	4.9
1971	1,211.4	66.5	6.6
1972	1,346.6	86.4	7.1
1973	1,601.9	114.8	8.5
1974	1,963.8	149.8	9.4
1975	2,528.5	181.9	9.3
1976	3,030.5	212.4	8.4
1977	3,836.7	277.7	9.2
1978	5,079.6	381.5	9.9
1979	5,745.7	512.9	10.1
1980	6,331.4	680.4	11.8

註：1) 年末現在 總到着額에서 元金償還額 累計를 除한 金額

2) 當該年度 利子支給額

3) 當該年度 利子支給額을 前年末殘額으로 나누는 分百比

資料：經濟企劃院「主要經濟指標」1981.

참 고 문 헌

韓國의 자도입안내, 대한상공회의소, 1981.

外國인투자자서, 경제기획원, 1981.

C. 韓國의 技術導入制度和 實績

1. 韓國의 技術導入制度

1) 技術導入契約의 定義

技術契約(licensing agreement)이란 권리의 성질이나 그 보호의 법제도가 서로 다른 特許權·實用新案權·意匠權 및 商標權 등의 工業所有權과 그밖의 노우 하우를 포함한 산업기술의 실시 내지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측에서 보면 技術導入契約이 된다.

外資導入法 제 2조에 의하면 기술도입계약이란 “대한민국국민이 外國인으로부터 工業所有權 기타 기술의 讓受,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또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同法 施行令 제 2조에 의하면 기술도입계약의 조건은 “代價의 지불을 對外支拂手段에 의하고 그 지불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단순히 용역이 아닌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것으로서 대가의 지불이 대외지불수단에 의하는 경우에는 外國換管理法에 따라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즉 기술도입은 일정한 계약에 의하며 외국기술을 대가를 지불하고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뜻하며 도입하는 기술내용은 특허, 노우 하우기술 정보, 기술지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같이 有償이란 점에서 종래의 무상기술원조와 구별되며, 무형의 기술적 지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술도입은 기계장치와 같은 유형의 기술장비를 도입하는 자본재 도입이나 플랜트 도입과도 구별된다.

2) 技術導入의 要件 및 節次

우리나라의 기술도입 계약의 인가업무는 外資導入法 제 19조 및 同施行令 제 3조와 제 5조에 의거 경제기획원 장관이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技術導入認可節次를 간소화하여 기술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1차(1978. 4. 20), 2차(1979. 4. 24) 및 3차(1980. 7. 7)에 걸쳐 外資導入法施行令을 개정함으로써 기술도입의 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현재에는 상당부분의 자유화가 이루어졌으며 멀지 않아 기술도입의 완전자유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① 技術導入의 要件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때나 혹은 계약을 變更, 更新할 때에는 경제기획원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기술도입계약은 그 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발효되어야 한다. 6월 이내에 계약을 발효시키지 못할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제기획원 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

② 技術導入의 節次

a) 具備書類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제기획원장관(자동인가사항은 主務部 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기술도입계약 인가신청서 5통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각 5통을 경제기획원(자동인가사항은 主務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기술도입계약 인가신청서
- ② 기술도입에 의한 사업계획서
- ③ 기술도입계약서의 사본(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는 國譯文첨부)
- ④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⑤ 기술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의 국적증명서
- ⑥ 기술을 받고자 하는 定款

그리고 증빙서류는 공증을 받아 해당국가에 駐在하고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b) 認可節次

④ 自動認可事項

가) 對象: 기술도입계약기간 또는 대가의 지불기간이 10년 이내이며 경상기술로가 당해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순매출액의 100분의 10이내인 계약

나) 節次: 심사없이 主務部 장관이 즉시 인가

⑥ 個別審査事項

가) 對象: 계약기간 또는 대가의 지불기간이 10년을 초과하거나 經常技術로가 당해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순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기술도입 계약이나, 自動認可事項에 해당되는 계약중 다음 각 사항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 ① 단순한 意匠 상표의 사용 또는 독점판매권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② 원자재, 부속품 또는 부속품의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③ 현저한 불공정 또는 수출제한조건 등 제한적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④ 국내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科技處 장관이 고시한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 ⑤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이 低級 또는 落後된 기술인 경우.

⑥ 그외 경제기획원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나) 節次: 個別審査事項은 다음의 절차가 필요하다.

① 우선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한 審査를 거쳐야 한다.

- i) 도입의 필요성
- ii) 기술의 내용 및 제공방법
- iii) 기술도입의 대가 및 계약기간
- iv) 국내의 자주적 기술개발의 저해여부
- v) 다른 동종의 기술과의 관련성
- vi)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

그리고 동시에 국민경제의 자립과 그 건전한 발전 및 국제수지의 개선에 적합한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 각 사항 및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主務部장관 및 科技處 장관에게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서류를 받은 장관은 당해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사항에 관한 사항별 의견 및 종합적 의견을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③ 경제기획원 장관은 그 회송된 자료에 대해 外資事業投資審査委員會 및 外資導入審議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認可하도록 되어 있다.

c) 認可通報

① 自動認可事項

인가한 주무부장관은 그 내용을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寫本을 科技處 장관에게 송부한다. 또한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通報한다.

② 個別審査事項

경제기획원 장관은 인가한 후 역시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通報한다. 그런데 인가시에 조건이 붙을 경우에는 기술도입이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d) 契約조건

계약은 특별한 규정이 계약서 등에 명백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및 기술공급자의 국가의 인가로서 발효하게 된다. 그러나 인가조건 또는 기타 형태로서 발효규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되, 양국의 인가가 그 요건이 된다.

동 계약발효는 우리나라의 인가일로부터 6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다만, 경제기획원 장관

의 허가를 얻음으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은 인가조건 이행 등 계약발효조건이 이루어져 계약이 발효되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데 기술이 도입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도입보고서를 경제기획원 및 주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韓國의 技術導入

선진공업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시책으로서 정부는 기술도입을 과거의 정부주도형의 규제적 시책에서 民間主導型의 자율적 시책으로 전환하였다.

우선, 정부는 1978년, 79년, 80년 3차에 걸쳐 「外資導入法」(施行令)을 改正하여 기술도입의 단계적 자유화를 실행하였고, 「技術開發促進法」을 대폭적으로 보강하여 기업의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상당한 혜택과 신기술 제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술도입에 대한 자금의 지원 및 royalty의 선금보장에 관법적제도를 확립하였으며, 기술도입선의 다변화를 위해 KAIST 기술도입상담센터로 하여금 구미선진제국과 기술이전 알선협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1) 租稅의 減免

기술도입계약에 의하면 기술제공자에게 지불되는 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는

- ①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면제되며

- ② 그 면제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간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그러나 이러한 조세의 減免은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해 減免되지 않을 수도 있다.
- 그리고 이러한 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 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그리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도 면제되고 있다. 이와같이 외국인의 근로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경우와 같이 減免신청을 하면 동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은 면제토록 되어 있다.

(2) 技術導入代價의 送金保障

- 도입기술의 대가(royalty)에 대하여는 인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 기술도입자는 외국인 투자 및 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 년도에 송금하게 될 금액이 표시된 技術料支拂送金計劃書를 매회계년도 종료 90일전까지 경제기획원 장관을 거쳐 재무부 장관에게 그 대외송금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이때에 재무부장관은 대외송금에 관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와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3) 資金의 支援

-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혹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차관계약에 수반하여 기술을 도입하는 자는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준비금을 적립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長期低利資金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情報支援制度

韓國科學技術院(KAIST)내의 기술도입상담센터(TTC)에서는 선진공업기술의 所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하여 관련산업계에 배포할 수 있는 資料銀行(data bank)을 설치하고 있다. TTC는 그 외에도 導入先 알선 및 導入技術의 타당성 검토, 기술이전에 관한 정책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韓國의 技術導入實績 및 效果分析

1. 技術導入實績

1962년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되면서 1980년말 까지 총 1,726건의 기술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술대가로 총 457,830천불이 지불되었다. 기술도입계약 건수의 추이를 보면 초창기 수년간은 수건내외의 실적을 보이다가 제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중에 비교적 활발한 도입활동이 이루어졌고 '72년 이후 중화학공업화의 정책추진에 따라 급속한 증가를 보여왔다. 특히 '78년에 들어와 산업의 확대, 구조의 고도화경향, 신규사업의 전개 등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수요를 선진기술의 도입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산업계 자체의 욕구와 기술도입촉진을 위한 기술

도입자유화의 결과로 기술도입계약 건수가 급증하였다. 기술도입자유화가 시작된 1978년부터 1980년까지 3년간의 건수(806건)는 총 도입 건수의 47%에 해당한다.

그런데 78년의 급격한 증가이후 79, 80년에는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의 기술투자 의욕의 저하에 의한 단기적인 현상으로 판단되며 향후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의 현 기술수준 및 자체개발역량을 감안할 때 당분간 선진기술도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表 C-1〉 참조)

업종별 허가 및 추진현황은 〈表 C-2〉와 같다.

(1) 年度別·業種別 技術導入 實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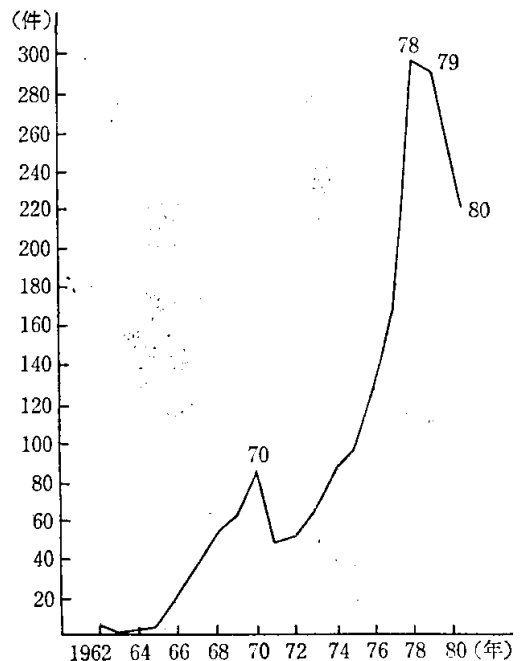
業種別로는 기계분야가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전자·전기분야 및 정유·화학이 그 다음 순위로서 우리나라 기술도입계약 건수의 증가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들 3개 工業分野가 전체 건수의 66%를 점하고 있다. (〈表 C-3〉 참조)

그러나 로열티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정유·화학분야가 기계분야보다 2배가 넘는 실정이며 그 다음이 금속과 전자·전기의 순이다. (〈表 C-4〉 참조)

〈表 C-1〉 技術導入 契約件數의 推移



〈表 C-2〉 業種別認可 및 推進現況

(1980. 12. 31 現在) (單位: 件)

業種別	認可	取消	滿了	技術料支給額 (千弗)
農業 및 畜産	10		5	5,237.2
食品	30		13	4,244.6
판프 및 製紙	12	1	4	7,346.8
紡織 및 織物	26		11	4,704.7
化學纖維	43	2	14	21,645.2
窯業 및 시멘트	50	5	13	9,138.5
精油 및 化學工業	306	8	102	156,745.5
製藥	37	3	24	1,746.6
金屬屬	160	10	62	51,247.6
電子 및 電氣機器	326	16	123	43,560.7
機械	512	28	132	77,418.1
造船	37	4	14	12,838.6
通信	44		20	14,149.4
電力	38		19	20,193.2
建設	25	3	10	13,197.2
其他	70	3	21	14,416.0
合計	1,726	83	587	457,829.9

資料: 경제기획원 「技術導入契約現況」(1980. 12. 31 현재)

〈表 C-3〉 業種別 年度別 認可現況

(1980. 12. 31 現在) (單位: 件)

業種別	年度別								合計
	62~66	67~71	72~76	77	78	79	80		
農業·畜産		6			1	2	1	10	
食品	2	6	7		1	9	5	30	
판프·製紙		4	3	3	2			12	
紡織·織物	5	2	10	2	2	1	4	26	
化學纖維	2	5	14	1	6	12	3	43	
窯業·시멘트	1	11	9	3	10	7	9	50	
精油·化學	5	59	85	25	42	54	36	306	
製藥	2	17	8	1	4		5	37	
金屬屬	1	28	45	17	24	26	19	160	
電子·電機	5	65	84	32	51	42	47	326	
機械	6	58	116	56	115	102	59	512	
造船		1	10	6	12	3	5	37	
通信	3	13	10		4	8	6	44	
電力		2	7	8	11	6	4	38	
建設	1	3	4	3	4	2	8	25	
其他		5	22	11	7	14	11	70	
合計	33	285	434	168	296	288	222	1,726	

〈表 C-4〉 業種別 年度別 代價支給現況

(1980. 12. 31 現在)

(單位: 千弗)

業種別	年度別 認可 件數	年度別							合計	構成比 (%)
		62~66	67~71	72~76	77	78	79	80		
農業·畜産	10		492.9	1,545.7	408.2	790.7	1,167.8	831.9	5,237.2	1.2
食品	30	21.0	167.9	1,850.6	651.1	434.7	506.4	612.9	4,244.6	0.9
판프·製紙	12			111.7	699.2	6,396.7	117.5	21.7	7,346.8	1.6
紡織·織物	26	148.0	110.5	405.6	301.4	1,709.2	1,425.3	604.7	4,704.7	1.0
化學纖維	43		699.4	8,001.2	4,123.9	3,727.3	4,100.2	993.2	21,645.2	4.7
窯業·시멘트	50		202.0	839.6	618.6	1,758.1	2,261.2	3,460.0	9,138.5	2.0
精油·化學	306	340.4	7,537.9	24,753.1	21,806.5	29,384.4	29,970.3	42,962.9	156,745.5	34.2
製藥	37		182.5	1,001.9	261.0	152.4	65.8	83.0	1,746.6	0.4
金屬屬	160		998.3	22,907.8	6,438.6	10,643.5	2,459.5	7,799.9	51,247.6	11.2
電子·電機	326	80.0	1,972.0	10,749.8	7,028.0	6,204.8	8,605.1	8,921.0	43,560.7	9.5
機械	512		1,119.0	13,447.5	8,142.8	8,515.9	24,959.3	21,233.6	77,418.1	16.9
造船	37			5,091.0	1,002.1	1,519.7	2,309.4	2,916.4	12,838.6	2.8
通信	44	185.9	1,550.6	3,296.9	518.4	461.4	3,865.6	4,270.6	14,149.4	3.1
電力	38		1,113.2	1,645.8	3,414.4	8,679.6	4,263.7	1,076.5	20,193.2	4.4
建設	25	2.0	99.0	147.2	1,741.9	1,151.4	1,453.8	8,601.9	13,197.2	2.9
其他	70		12.5	713.1	899.9	3,535.6	6,403.2	2,851.7	14,416.0	3.2
合計	1,726	777.3	16,257.7	95,507.5	58,056.0	85,065.4	96,934.1	107,201.9	457,829.9	100.0
增加率(%)					00.8	46.5	10.4	14.2		

반면 일차산업부문과 특히 정밀화학부문인 제 약분야의 기술도입(신기술의 제공을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 실적이 낮다.

(2) 國別·業種別 技術導入 實績

우리나라 기업이 선정하는 Licensor는 국별로 볼때 매우 편중되어 있다.

1980년까지 도입(인가)도 1,726건중 1,014건(58.7%)이 일본으로부터, 391건(22.7%)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것이었다.

西歐諸國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은 미·일에 비해서 건수상으로 상당히 적지만 주요 기술도입 원으로 나타나 있다. 서독(78건), 영국(58건), 프랑스(36건) 등 주요 선진국들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表 C-5> 참조)

분야별로 보면 미국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건력(원자력포함)과 건설분야 그리고 농축산 및 식품, 방직·직물분야의 기술도입이 많은 편이며, 일본으로부터는 기계, 전기·전자, 화학, 금속등 중화학공업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업화에 있어서 일본의 기술 기여도를 부인할 수 없다.

(3) 國別·年度別 技術導入 實績

<表 C-5> 國別 業種別 認可現況
(1980.12.31 現在)

(單位:件)

業種別	美國	日本	西獨	英國	佛蘭西	其他	合計	構成比(%)
農業·畜産	6	4					10	0.6
食品	14	13				3	30	1.7
pulp·製紙	6	4	1			1	12	0.7
紡織·織物	13	5	1	1	1	5	26	1.5
化學織維	8	28	1		3	3	43	2.5
窯業·시멘트	9	33	3	3	1	1	50	2.9
精油·化學	78	184	8	14	4	18	306	17.7
製藥	11	13	5	2	1	5	37	2.1
金子·電機	25	100	3	9	4	19	160	9.3
電子·電機	71	224	8	2	3	18	326	18.0
機械	86	323	32	22	10	39	512	29.7
造船	6	10	2	4	4	11	37	2.1
通信	10	21	4			9	44	2.6
電力	18	13	4		1	2	38	2.2
建設	15	4		1		5	25	1.4
其他	15	35	6		4	10	70	4.1
合計	391	1,014	78	58	36	149	1,726	
(%)	(22.7)	(58.7)	(4.5)	(3.4)	(2.1)	(8.6)	(100.0)	(100.0)

<表 C-6> 國別 年度別 認可現況
(1980.12.31 現在)

(單位:件)

年度別	美國	日本	西獨	英國	佛蘭西	其他	合計	備考(累計)
1962~1966	13	11	4	1	1	3	33	33
1967~1971	61	203	6	4		11	285	318
1972~1976	90	280	13	16	6	29	434	752
1977	45	82	16	3	3	19	168	920
1978	67	157	12	13	9	38	296	1,216
1979	61	157	17	16	8	29	288	1,504
1980	54	124	10	5	9	20	222	1,726
合計	391	1,014	78	58	36	149	1,726	
構成比(%)	(22.7)	(58.7)	(4.5)	(3.4)	(2.1)	(8.6)	(100.0)	

일본으로부터의 도입은 韓·日 國交 正常化 이후 1966년부터 시작하여 계속 증가하다가 '71년을 고비로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表 C-6> 참조) 미국은 1966년까지 선두를 유지하였으나 그후 계속 2위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1973년의 석유위기 이후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으로부터의 도입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로얄티 지급에 있어서도 일본, 미국, 유럽 지역의 순위는 변함이 없으나, 그 비율에 있어서는 일본이 인가 件數(58.7%)에 비하여 지급액(36.7%)이 낮은 편이며 미국의 경우에는 인가 건수(22.7%)보다 지급액(30.7%)이 더 높음을 보이고 있다. (<表 C-7> 참조) 즉 件當 기술투자 규모면에서는 일본이 미국에 비해 상당히 작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表 C-7> 國別 年度別 代價支給現況
(1980. 12. 31 現在)

(單位: 千弗)

國 別 年度別	美 國	日 本	西 獨	佛 蘭 西	其 他	合 計
1962~1966	553.1		194.2		30.0	777.3
1967~1971	7,816.2	5,041.6	2,381.3		1,018.6	16,257.7
1972~1976	21,265.5	58,653.5	5,627.9	1,574.3	9,386.3	96,507.5
1977	17,221.6	25,436.9	2,556.6	483.8	12,357.1	58,056.0
1978	24,201.3	27,978.6	2,842.7	1,064.7	28,978.1	85,065.4
1979	34,216.4	22,768.9	3,272.3	4,254.8	29,423.7	93,934.1
1980	35,535.5	28,230.0	2,808.3	5,731.2	34,926.9	107,231.9
合 計	140,809.6		19,683.3	13,108.8	116,120.7	457,829.9
構成比(%)	30.7		4.3	2.9	25.4	100.0

<表 C-8> 分野別 契約期間

契約期間 營業分野	3年 未滿	3年	3~5年 ²⁾	5年	5~10 ²⁾ 年	10年	10 ²⁾ ~ 15年	15年	15年 以上	其他	計
農業 및 畜産		3			2	1		1			7
食 品	3	3		5	3	1					15
펄프 및 製紙		7	2	4			1				14
紡織·織物	2	5		5	2	4	1	2			21
化學纖維	5	6		8	4	4		1			28
窯業 및 시멘트	2	13		8	3	6	1				33
精油 및 化工	19	66	3	34	23	36	5	12	5	1 ¹⁾	204
製 藥	4	11	1	10	5						31
金 屬	13	42	7	15	7	10	1	1	1		97
電氣 및 電子	11	93	4	88	29	14	2	1	1		243
機 械	19	126	13	129	29	34	6	3	1		360
機 造	6	13		5	4	2					30
通 信	1	5	2	13	2	1	2				26
電 力	14	2	5		5				1		27
電 建	4	1	6	2	1						14
其 他	6	8	2	5	1	3	2		3		30
計	109	404	45	331	120	116	21	21	12		1,180

註: 1)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2) 동기간사이를 의미. 예: 3~5년은 3년과 5년은 제외

3) 1962~1978년간 기술도입에 대한 것임.

(4) 分野別 契約期間

1978년까지 도입된 기술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은 416件, 그 나머지는 계약유효기간중에 있다.

계약기간은 길고 짧음에 따라 기술제공자에게 지불되는 로열티의 규모에 영향이 있고 각종 계약사항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쌍방간에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계약기간이 길면 기술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의 구속력에 따라 보다 많은 로열티를 수취할 수 있고, 반면에 기술도입자(licensee)의 입장에서는 로열티의 보다 많은 부담대신에 도입기술 소화의 기회 및 기술제고자의 개발기술을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은 계약기간이 3년(404건), 5년(331건)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石油精製, 石油化學분야에서 10년 또는 그 이상의 계약기간을 갖는 것이 많다. <(表 C-8) 참조>

일본의 경우 5년 미만의 것은 약 33%(1977년)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50%에 달하여, 대체로 우리나라의 기술도입 계약기간이 짧은 경향이다.

2) 技術導入의 動機

(1) 技術導入의 目的

분 류 내 용	빈도수	포함된 주기기술분야	
		대 분류	소 분류
① 신제품·신기술개발	39.8% (259)	화학, 기계, 전기	요업·시멘트, 통신키기 이약품
② 제품및 기술의 품질, 성능개선	27.8% (181)	기타, 전기	방직직물, 식품·사료기계
③ 생산성 증대	12.6% (82)	기타, 금속, 화학	화학섬유, 식품·사료 기타
④ 시설 개선	9.1% (59)	금속, 화학	의약품, 금속, 식품·사료
⑤ 생산규모 확대	8.3% (54)	금속, 전기	금속, 전기·전기기기, 기타화학
⑥ 기 타	2.5% (16)	금속, 기타	기타화학

설문에 대하여 기술도입업체가 한 응답의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주목적은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체 기술도입업체 중의 약 4할이 응답하였다. 이것은 국내의 기술개발 능력이 미약하여 기술혁신을 위해 외국의 기술

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신설하여 新規事業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체의 약 3할은 기존기술보다 우수한 기술이거나 또는 기존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다.

그리고 나머지 약 3할은 생산성의 증대, 시설의 개선 및 생산 규모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 기존시설이 舊型이거나 老朽化했거나 또는 零細性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설상의 문제는 특히 금속분야에서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2) 技術導入의 動機

분 류 내 용	빈도수	포함된 주기기술분야	
		대 분류	소 분류
① 신제품 개발	33.9% (186)	금속, 기계, 기타	광프·제지, 금속, 식품·사료
② 수입대체	32.7% (177)	기계, 화학	기계, 기타화학, 화학섬유
③ 수출증대	19.1% (105)	기타, 전기, 금속	방직직물, 화학섬유, 기타
④ 원자재 자체 공급	6.4% (35)	전기, 기계	의약품, 전자·전기기기, 기계
⑤ 기존업종과의 경쟁	5.6% (31)	기타, 전기, 화학	의약품, 식품·사료, 전자·전기기기
⑥ 기 타	2.7% (15)	금속, 기타, 전기	금속, 전자·전기기기

이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기술을 도입하게 된 동기는 신제품의 개발과 수입대체를 위한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 기업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즉 기술도입업체는 국내의 다른 기업체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기존업체와 경쟁하기 보다는 국내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제품, 따라서 국내에서는 신제품에 속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입대체하고자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원자재 자체공급이 기술도입의 주요동기가 아니라는 사실로써도 어느정도 타당시 된다.

(3) 현재의 기술도입선을 선택한 이유

기업체가 기술도입선을 선택할 때에는 주로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메이커를 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전기기술도입업체중의 약 6할이 이에 해당한다.

특허공보나 문헌을 통해서 우수한 기술을 찾

분류 내용	빈도수	포함된 주기기술분야	
		대분류	소분류
①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메이커이기 때문	60.9% (207)	금속, 기타, 화학	통신기기, 화학섬유, 의약품
② 상거래 관계상	22.6% (87)	기계, 전기	기타화학, 방직직물·전자·전기기기
③ 인적관계	6.8% (23)	화학, 금속, 전기	기타화학, 전자·전기기기
④ 우연한 동기	2.9% (10)	기타 화학, 금속	기타화학
⑤ 기타	6.8% (23)	금속, 기계, 전기	금속, 전자·전기기기

아서 기술 그 자체가 훌륭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그 기술의 保持者를 도입선으로서 택하기 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나 해외여행을 통하여 見聞하게 되는 유명메이커의 제품 또는 제품 카탈로그(catalog)를 보고 그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을 도입하고자 그 유명메이커를 도입선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기술도입 상대국으로 볼 때에 약 7할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의 기술도입선의 대부분이 세계적인 유명메이커라고 간주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일본 국내에서나 또는 우리나라에 비교적 널리 알려진 기업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技術導入形態

(1) 技術導入內容

분류 내용	빈도수	포함된 주기기술분야	
		대분류	소분류
① 기술정보	23.0% (271)	금속, 전기	통신기기, 기타, 금속
② 기술지도 및 훈련	22.8% (269)	금속	기타, 식품사료, 통신기기
③ 노우하우(knowhow)	19.5% (230)	금속, 기계	금속, 요업시멘트, 기타
④ 특허실시권	13.1% (154)	기계	통신기기, 팔프제지, 기계
⑤ 상표·상호 등의 실시권	10.8% (127)	기타, 기계, 화학	방직직물, 의약품, 식품사료
⑥ 기술용역	10.8% (127)	화학, 금속	요업시멘트, 기타 화학, 화학섬유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외국의 기업체와 技術援助契約를 체결하여 도입하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항목에 응답한 결과를 보면 총 400여 건의 응답건수 중에서 特許實施權을 許與받는

다고 한 것이 154건으로서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특허실시권의 정의에 관하여 오해한 나머지 과대하게 된 것으로 해석되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설문으로 제시한 분류항목에 관해서 응답자가 중복 체크한 총빈도수에 대하여 분류 항목별 빈도수를 백분율로 나타내어 기술도입내용 중에서 주로 어떠한 형태의 것이 많은지를 살펴보면 기술정보, 기술지도 및 훈련과 노우 하우가 전체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정보와 기술지도 및 훈련을 광의로 해석하여 노우 하우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면 기술도입의 형태 중에서 노우 하우의 비중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우 하우의 도입은 특히 금속분야에서 비교적 많다.

(2) 技術情報의 導入形態

분류 내용	빈도수	포함된 주기기술분야	
		대분류	소분류
① 도면	23.0% (245)	화학, 기계, 금속	통신기기, 방직직물, 기타
② 사양서	21.3% (227)	화학, 금속, 기계	금속, 통신기기, 기타
③ 설명서	19.9% (212)	화학, 금속	팔프제지, 통신기기, 화학섬유
④ 견본	15.8% (169)	화학	팔프제지, 방직직물, 의약품
⑤ 보고서	11.3% (121)	금속, 전기, 화학	금속, 화학섬유, 식품사료
⑥ 기타	8.7% (93)	금속, 화학, 전기	요업시멘트, 식품사료, 금속

기술도입에 의해 기술도입선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정보의 형태를 보면 도면, 사양서, 설명서의 순위로 많다고 볼 수 있으나 특별히 어떠한 형태의 것이 현저하게 많지는 않고 모든 형태의 것을 거의 통틀어서 골고루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화학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비교적 더 많다.

4) 技術導入이 企業經營에 미친 效果分析

(1) 生産原價의 節減

a) 종전의 기술에 의한 제품과 비교할 경우

도입기술에 의해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종전에 자기의 회사에서나 혹은 국내의 다른 업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 도입기술에 의해서 생산한 제품과

분 류 내 용	빈도수	포함된 주기기술분야	
		대 분류	소 분류
① 원자재가 50%미만 절약되었다	36.5% (70)	화학, 전기	기타화학, 기타, 의약품
② 원자재가 50%이상 절약되었다	5.7% (11)	기계	기계
③ 노동력이 50%미만 절약되었다	28.6% (55)	금속, 기타, 전기	금속, 기타, 화학
④ 노동력이 50%이상 절약되었다	8.9% (17)	기계	전자기기
⑤ 전력이 50%미만 절약되었다	16.6% (32)	금속, 화학, 전기	화학섬유, 식품사료, 금속
⑥ 전력이 50%이상 절약되었다	3.6% (7)	기계, 전기	기계

를 원자재 노동력 소비에너지(특히 전력)면에서 비교하게 한 설문지의 응답분포를 보면, 원자재가 절약되었다는 것이 가장 많아서 약 42%를 차지하고 다음에 노동력이 절약되었다는 것이 약 38%를 나타내며 소비에너지가 절약되었다는 것이 약 20%를 차지한다. 원자재와 노동력 및 소비에너지의 절약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분포를 보다 간단한 비례로 나타내면 2:2:1이 된다. 즉 도입기술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에너지가 절약되는 경우보다는 원자재와 노동력이 절약되는 경우가 2배 정도로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b) 제품의 원가수준

분 류 내 용	빈도수	포함된 주기기술분야	
		대 분류	소 분류
① 외국보다 저렴하게 되었다	38.6% (86)	기타, 전기, 금속	기타, 방직물, 전기기기
② 외국보다 비싸거나 종전의 국내수준보다 싸게 되었다	30.0% (67)	화학, 기계	화학섬유, 의약품, 기타, 화학
③ 외국과 같게 되었다	17.0% (38)	기계, 전기, 기타	기계, 전자전기기기
④ 종전의 국내수준보다 비싸다	8.5% (19)	화학	기타화학
⑤ 종전의 국내수준과 동일하다	5.8% (13)		

도입기술에 의해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 수준이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적어도 동일하거나 보다 싸게 되었다고 응답한 것이 전체의 약 56%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보다 싸다고 한 경우는 전체의 약 39%이다. 따라서 기술도입에 의해서 사업을 육성함으로써 1/3가량은 가격면

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분야로 볼 때에 특히「기타」분야가 이 경우에 속하는 것이 많으며 보다 세분해서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기타」부분과 방직직물 부문이 비교적 제품의 원가가 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전의 국내 수준과 동일하거나 보다 비싸다고 한 응답은 전체의 약 14%를 차지하는데 비싸다고 한 것은 특히 금속 분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 單位時間當 生産能力

분 류 내 용	빈도수	포함된 주기기술분야	
		대 분류	소 분류
① 외국(미국, 일본)보다 못하나 종전의 국내수준보다는 향상되었다	57.7% (150)	기계, 금속, 전기	통신기기, 기계, 금속
② 외국과 같게 되었다	28.5% (74)	기타, 전기, 화학	의약품, 기타, 전자전기기기
③ 종전의 국내수준과 동일하다	10.0% (26)	화학, 금속	기타화학, 금속
④ 외국보다 더 좋게 되었다	3.5% (9)	전기	전자전기기기
⑤ 국내수준만 못하다	0.3% (1)		

기술도입에 의해서 生産規模나 生産收率面에서 종전의 국내 수준보다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는 약 58%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기계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수준과 동일하거나 더 나아졌다는 경우는 32%이다. (이 중에서 외국보다 더 나아졌다는 경우는 전체의 겨우 3.5%)

(3) 製品의 品質水準

분 류 내 용	빈도수	포함된 주기기술분야	
		대 분류	소 분류
① 신제품이 개발되었다	46.4% (127)	금속, 화학, 전기	통신기기, 의약품, 금속
② 기존제품에 비해 전체 품질이 향상되었다	33.9% (93)	기타, 기계, 전기	기타, 기계, 전자기기
③ 기존제품에 비해 일부 품질이 향상되었다	19.7% (54)	기계, 화학, 금속	기타화학, 기계, 금속

기술도입에 의해 생산하게 된 계약제품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생산되는 제품과 계약

제품은 아니지만 도입기술을 모체로 하여 독자적으로 새로이 개발 생산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간주하고 이 신제품이 개발되었다는 것과 기존 제품에 비해 품질이 향상되었다는 비가 대략 46:54로 나타났다.

(4) 技術水準의 向上

기술도입에 의해서 신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경우와 전체 또는 일부 공정의 생산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경우의 비는 대략 45:55이다. 이 두가지를 비교적 많이 포함한 부분은 전자 및 전기 기기로서 이 부문이 기술도입에 의해서 기술의

빈도 내용	빈도수	포함된 주기술분야	
		대분류	소분류
① 산업기술이 개발되었다	45.3% (151)	전기, 기타	통신기기, 의약품, 전자전기기기
② 전체공정의 생산능력이 향상되었다	35.8% (119)	금속, 기계, 전기	방직직물, 전자전기기기, 기타화학
③ 일부공정의 생산능력이 향상되었다	18.9% (63)	기계, 화학	전자전기기기, 기타, 화학, 기계

수준이 다른 부문에 비해서 비교적 가장 많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된다.